

투자위험등급 :
2 등급
[높은 위험]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피델리티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델리티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피델리티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1 년 08 월 10 일

주) 본 투자설명서는 최초 제출 이후 변경된 내용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투자설명서의 다른 부분들은 원래의 내용을 유지하였으므로 본문 전체를 상기 작성기준일자로 갱신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1 년 08 월 17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60,000,000,000,000 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본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 (전화: 02-3783-0901 (www.fidelity.co.kr))

금융투자협회(전화: 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 전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본문 중 전환에 관한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4. 피투자펀드에 관한 사항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명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피델리티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29980
종류 A	29982
종류 C	29983
종류 C-e	97114
종류 CP	97115
종류 I	97116
종류 F	97117
종류 N	9711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전환형(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60,000,000,000,000좌

주 1) 이 투자신탁은 60,000,000,000,000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본 집합투자기구는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본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하고,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fidelity.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명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피델리티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29980
종류 A	29982
종류 C	29983
종류 C-c	97114
종류 CP	97115
종류 I	97116
종류 F	97117
종류 N	9711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1.01.25	- 최초설정
2011.03.	- 전환형 구조로 변경
2011.08.	- 동일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추가 등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이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입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84번지 서울파이낸스센터 4층 (전 화) 02-3783-0901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운용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화자산의 환헤지 거래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위탁되는 환헤지 거래는 미달러와 외국통화와의 환헤지 거래이며, 미달러와 원화와의 환헤지 거래는 집합투자업자가 팀단위로 직접 수행합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해당 펀드	피델리티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명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설립일	1981년 5월 12일
회사주소	Level 2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Admiralty, Hong Kong 전화번호: (852) 2629 2800 팩스번호: (852) 2845 9051
업무위탁범위	환헤지 관련 운용·운용지시 업무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1년 1월 31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장성문	1971	투자서비스 담당 이사	11 개	19,030 억원	[주요 경력] 주식운용 및 리서치 - LG 투신운용 (8 개월) - 메리츠투자자문 (4 년) 보험사 자산운용 - 삼성화재 (2 년) [학력 및 기타 이력] 국제재무분석사(CFA)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존스홉킨스 대학 재무학 석사

※ 상기 운용현황은 모투자신탁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모투자신탁에서의 원-달러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헤지거래는 운용팀에서 담당합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 기간
이정민	설정~2011.03.
장성문	2011.03.

다. 모투자신탁의 해외 위탁 자산운용회사 운용전문인력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기준통화는 미달러이며 모투자신탁은 원-미달러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는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팀에서 담당합니다.

한편,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모투자신탁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통화 간의 헤지거래(예. 피투자펀드의 표시통화인 미달러화와 피투자 펀드가 보유하는 외국 이중통화 간의 선도환 거래)를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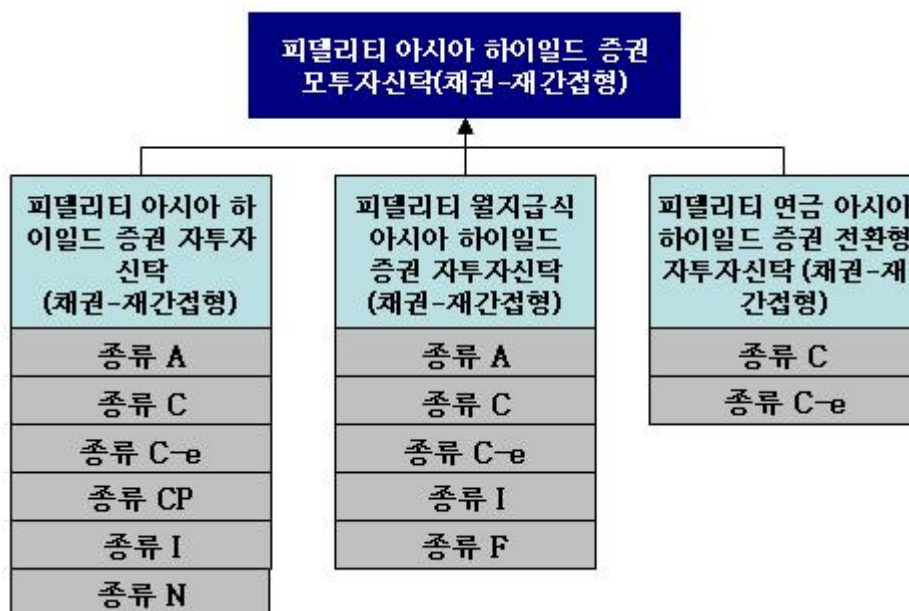
이러한 외국통화 간의 헤지 거래는 해외 위탁 자산운용회사 내 외환 헤지거래를 전담하는 팀에서 팀 단위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다만, 헤지거래 여부 및 그 수준을 결정하는 팀과 실제 헤지거래를 위한 매매주문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다른 등 관련된 팀이 다수인 관계로 담당팀을 특정하여 기재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헤지거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내용에 따라 소극적(passive)으로만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제2부, 9. 가, (4) 위험관리의 내용 중 (가) 환위험 관리 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설정일 및 가입자격]

구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종류 A (펀드코드: 29982)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종류 C (펀드코드: 29983)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종류 C-e (펀드코드: 97114)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종류 CP (펀드코드: 971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
종류 I (펀드코드: 97116)		최소 50 억원에서 최대 100 억원까지 투자하는 개인, 최소 50 억원에서 최대 500 억원까지 투자하는 법인
종류 F (펀드코드: 97117)		기관투자자, 기금, 100 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개인, 500 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법인, 집합투자기구, Wrap Account 계정, 특정금전신탁
종류 N (펀드코드: 97118)		모투자신탁의 초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하는 해외 계열사

[수수료]

명칭 (클래스)	수수료율			
	선취 판매 수수료	후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¹⁾	전환 수수료
종류 A	0.7% 이하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
종류 C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e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P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I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F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N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주1)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합니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 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합니다)별로 상기의 환매 수수료를 징구 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보수]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종류 A	0.1000	0.6500	0.0400	0.0250
종류 C	0.1000	1.0000	0.0400	0.0250
종류 C-e	0.1000	0.8500	0.0400	0.0250
종류 CP	0.1000	0.5000	0.0400	0.0250
종류 I	0.1000	0.3000	0.0400	0.0250
종류 F	0.1000	0.0500	0.0400	0.0250
종류 N	0.1000	0.0000	0.0400	0.0250

다. 전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232조에 의거한 전환형투자신탁으로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음의 투자신탁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하나의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

습니다.

전환대상 투자신탁

- 피델리티 월지급식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전환대상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피델리티 월지급식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① 개요

구분	주요내용
명칭	피델리티 월지급식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증권신고서 제출일	2011년 3월 11일
투자목적/전략/ 투자위험	- 전환대상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목적/전략/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과 동일함

② 최초설정일 및 가입자격

구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종류 A (펀드코드: A1705)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종류 C (펀드코드: A1706)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종류 C-e (펀드코드: A1708)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종류 I (펀드코드: A1710)		최소 50 억원에서 최대 100 억원까지 투자하는 개인, 최소 50 억원에서 최대 500 억원까지 투자하는 법인
종류 F (펀드코드: A1712)		기관투자자, 기금, 100 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개인, 500 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법인, 집합투자기구, Wrap Account 계정, 특정금전신탁

③ 수수료

명칭 (클래스)	수수료율			
	선취 판매 수수료	후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¹⁾	전환 수수료
종류 A	0.7% 이하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
종류 C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e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I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F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주1)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합니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 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합니다)별로 상기의 환매 수수료를 징구 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④ 보수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종류 A	0.1000	0.6500	0.0400	0.0280
종류 C	0.1000	1.0000	0.0400	0.0280
종류 C-e	0.1000	0.8500	0.0400	0.0280
종류 I	0.1000	0.3000	0.0400	0.0280
종류 F	0.1000	0.0500	0.0400	0.0280

※ 수익증권의 전환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내용 중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다. 전환'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피델리티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투자신탁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 발행 수익증권에 투자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약 90% 수준
피델리티 월지급식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투자신탁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 발행 수익증권에 투자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약 90% 수준. 다만, 월로 분배하는 월 분배금은 예금의 이자와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며, 또한 월 분배금은 전혀 확정된 수익이 아님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투자신탁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 발행 수익증권에 투자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약 90% 수준 -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구분	주요내용
명칭	피델리티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등록신청서 제출일	2010년 11월 5일
투자목적	-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발행인의 투자적격등급 이하의 하이일드 증권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경상수익(current income)과 자본이득을 달성하고자 함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주요투자전략	-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발행인의 투자적격등급 이하의 하이일드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함 -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약 90% 수준
주요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모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투자원금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환율변동 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분산투자관련위험, 신흥시장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재간접투자위험, 가격조정정책관련 위험,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하이일드채권 (고수익·고위험 채권) 투자위험, 신용디폴트스왑(CDS) 투자위험, , 전환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유동성위험, 환매위험,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해지위험)이 있음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및 환율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참고)
--	---

라. 재간접형 구조

모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100%까지 피델리티펀드-아시아하이일드펀드 (Fidelity Funds-Asian High Yield Fund, “피투자펀드”)에 투자합니다.

피델리티펀드는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투자회사 (Umbrella Type Fund)로서, 피델리티 펀드는 다양한 하위 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하위펀드는 고유의 투자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펀드의 자산은 각 하위펀드에 의해 보유됩니다. 모투자신탁은 피델리티펀드의 여러 하위펀드 중의 하나인,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발행인의 투자적격등급 이하의 하이일드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에 투자합니다. 피투자펀드는 룩셈부르크 법률 및 규정, 피델리티 펀드의 정관에 따라 운용이 될 것이며, 피투자펀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3 부에 기재된 피투자펀드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투자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열람가능한 장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피투자펀드 판매회사의 영업점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명칭	- 피델리티펀드 (Umbrella Fund) - 하위펀드 명칭: 피델리티펀드-아시아하이일드펀드 (Fidelity Funds – Asian High Yield Fund) - 종류: 클래스 A-ACC-USD
펀드설립일	- 2007년 4월 2일
펀드 규모	- 미화 1,360 백만달러 (2010년 9월 30일 현재)
운용전문인력	- Bryan Collins
운용회사	- FIL Fund Management Limited
투자목적	- 피투자펀드는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발행인의 투자적격등급 이하의 하이일드 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경상수익(current income)과 자본이득을 달성하고자 함.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종류의 채무성 증권에는 높은 위험이 수반되고 그러한 채무성 증권은 최저신용등급 기준에 부합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함. 이러한 채무성 증권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을 것임. 투자적격등급 이하의 증권은 Standard & Poor's로부터 BB+ 이하의 등급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등급을 받은 증권을 말함. - 다만, 피투자펀드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주요투자전략	- 피투자펀드의 운용 절차는 지속적으로 비교지수보다 낮은 변동성과 높은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복합적 전략 접근방식(multi-strategy approach)에 기초하고 있고, 복합적 전략 접근방식이란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하여 투자 확신감이 높은 종목들(high conviction) 및 상관관계가 적은 전략들이 다수 결합되어 있는 접근방식을 의미함. 이러한 하이일드프로세스는 기초신용 분석(fundamental credit analysis)과 정량적 모델링(quantitative modelling)에 따른 리서치 및 평가(valuation)에 초점을 두고 있음. 보다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하이일드 투자의 특성상, 상향식 선별(bottom-up name selection)에 더욱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고, 또한 하이일드수익의 불균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됨. 피투자펀드의 운용 전략에는 투자 포지션을 매우 다양하게 하여 어떠한 특정 포지션이 전체 펀드 위험을 좌우하지 않

	도록 하는 것 등이 있음. 각 포지션은 피델리티 자체 리서치(in-house research)에 기반한 통찰에 따라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선별함. 피델리티의 채권투자에 대한 철학에 비추어 피델리티는 독자적인 피델리티 자체 리서치가 확실한 경쟁력을 제공한다고 믿고 있음. 예를 들어, 신용등급평가기관 및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대상 기업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보다 피델리티의 크레딧 애널리스트가 훨씬 신속하게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음.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의 역할은 동료들과 전략회의를 주도하고 투자 확신감이 높은 아이디어(high conviction ideas)에 초점을 두면서 다양한 측면에 걸쳐서 펀드 위험을 조율하는 것임. 위험은 피델리티 자체 정량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통제함.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피투자펀드의 오류를 채권 및 발행인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있음.
주요투자위험	- 이자 지급 의무 및 원본 상환 또는 기타 채무상의 의무 등 증권 발행인의 의무가 전부 및/또는 적시에 충족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 - 신흥시장의 증권은 선진국 시장 증권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클 수 있고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가.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그 자산의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발행인의 투자적격등급 이하의 하이일드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펀드 - 아시아하이일드펀드(Fidelity Funds - Asian High Yield Fund)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모투자신탁은 피투자펀드의 기준통화인 미달러화와 원화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및 미 달러화와 피투자펀드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을 표시하는 외국통화간에도 환헤지를 수행할 것이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약 90% 수준입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당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최대 100%까지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 83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의 상품에 한함)의 방법으로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법 제 83 조 제 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 운용합니다.

1. 아래 제2호에 투자하는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재산은 피델리티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

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가.(1).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호 및 제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위 8. 가.(1).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5-30 조 제 1 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다만, 다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가. 피델리티펀드 - 아시아하이일드펀드 (Fidelity Funds - Asian High Yield Fund)
2) 수익증권 등	4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5-30 조 제 1 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수익증권등”이라 한다)
3) 장내파생상품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이 10%이하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실물자산·통화나 채권·실물자산·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장내파생상품”)
4) 장외파생상품		상기 제 3)호에 상응하는 채권, 실물자산 또는 통화와 관련된 되는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5) 금전차입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금전의 차입”). 다만,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기타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 83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함)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정됨) 3. 상기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추가로,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호 및 제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됨)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됨)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을 구성하는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1)호 내지 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나. 투자제한

(1) 당해 투자신탁

-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가)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2) 모투자신탁

- (가)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3.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i)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ii)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라. 위 본문 (i)과 관련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함)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함)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마. 위 본문 (ii)와 관련하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10.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1.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 나.(2).(가)의 1호 내지 10호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모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2).(가).3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2)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모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발행인의 투자적격등급 이하의 하이일드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펀드 - 아시아하이일드펀드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합니다.

(3)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 최초설정일~2011.4.30: **BofA/Merrill Lynch Asian Dollar High Yield Corporate Constrained Index Hedged to KRW**
- 2011.5.1이후: **BofA/Merrill Lynch Blended Index : ACCY 20% Lvl4 Cap 3% Constrained Hedged to KRW**

* BofA/Merrill Lynch Blended Index: ACCY 20% Lvl4 Cap 3% Constrained Hedged to KRW: BofA Merrill Lynch Asian Dollar High Yield Index에 포함된 회사채가 동일하게 포함되지만, 동일 발행자의 비중이 3%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Level 4”업종의 가중치가 최대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BofA/Merrill Lynch는 채권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4단계 카테고리 나눈다. 1단계(Level 1)는 자산별, 2단계(Level 2)는 그룹별, 3단계(Level 3)는 카테고리 업종별, 마지막 4단계(Level 4)는 하위카테고리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 Level 4’제한은 마지막 4단계(Level 4)의 업종비중이 전체지수의 20%를 상회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로, BofA Merrill Lynch Asian Dollar High Yield Index 는 미국 및 유로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시아 정부, 공공기관 및 개별 기업이 발행한 투기등급 달러화 증권의 성과를 추적합니다. 인덱스에 포함된 적격국가로는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 뉴 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등을 포함하며, 글로벌 신용평가기관(Moody’s, S&P, Fitch)의 평균등급을 기준으로 투자등급 이하 유가증권이 대상이 됩니다.

* BofA/Merrill Lynch Blended Index: ACCY 20% Lvl4 Cap 3% Constrained Hedged to KRW: 투자되는 역외펀드의 벤치마크지수인 BofA/Merrill Lynch Blended Index: ACCY 20% Lvl4 Cap 3% Constrained에 대해 원화로 헤지한 지수입니다.

(4) 위험관리

(가) 환위험 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매매가 자유로운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위험을 소극적으로 헤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헤지의 목적은 주로 선물환계약을 이용하여 투자신탁의 외국통화자산 및 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투자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위험을 가능한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기 선물환계약에는 일정 수준의 거래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외국통화에 대한 환헤지 거래는 기타 통화와 대비한 원화가치의 상승이나 하락 여부에 관계 없이 실행될 것입니다. 환헤지를 실행하게 되면, 매매가 자유로운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상기 외국통화에 대비하여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환헤지가 실행되는 경우, 헤지 효과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될 것입니다.

목표환헤지비용은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약 90% 수준이지만, 실제 헤지비용은 목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 달러화와 피투자펀드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을 표시하는 외국통화간에도 환헤지를 수행합니다.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당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인 아시아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하이일드채권 유니버스에 속한 모든 주요국가가 고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보여, 향후 수년간 아시아 개발도상국들(Developing Asia)이 글로벌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긍정적 경제환경과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무상태는 아시아기업들의 부채상환능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호조 덕분에 아시아기업들의 파산 및 신용등급하락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하이일드채권 투자자들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이일드채권을 발행하는 아시아기업에는 아시아전역에 걸쳐 활동하는 여러 대형 금융기관 및 기업들(보통 자국 시장에서는 대표적인(national champions) 금융기관 및 기업들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기업들은 레버리지가 비교적 낮고 안정적이며, 정점에 이른 부도율도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이 자산군과 관련된 리스크로는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 중국의 과도한 재정·통화 긴축, 아시아 하이일드채권으로의 강력한 자금유입이 역전될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관련 국가 현황:

※ 다음은 관련 국가 전부에 대한 정보는 아니며, 제시된 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	--------------

GDP (09년, 십억 US\$)	539			인구 (10년 추정, 만 명)	24,027
Real GDP 성장률 추이 (전년대비 증감율, %)	07년	08년	09년	수출 (09년, 십억 US\$)	119
	6.3	6.1	4.5	수입 (09년, 십억 US\$)	84
주요산업	1차산업 15.3%, 2차산업 47.6%, 3차산업 37.1% 농업(쌀, 타피오카, 땅콩, 고무, 코코아, 커피, 팜오일 등) 석유, 천연가스, 석탄, 섬유, 신발, 광업, 시멘트, 화학비료, 합판, 고무, 관광 등				

중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 (09년, 십억 US\$)	4,909			인구 (10년 추정, 만 명)	133,861
Real GDP 성장률 추이 (전년대비 증감율, %)	07년	08년	09년	수출 (09년, 십억 US\$)	1,204
	13	9	9.1	수입 (09년, 십억 US\$)	954
주요산업	1차산업 39.5%, 2차산업 27.2%, 3차산업 33.2% 철강, 알루미늄 등 금속류, 석탄, 기계, 섬유, 석유, 시멘트, 소비재, 등				

인도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 (09년, 십억 US\$)	1,236			인구 (10년 추정, 만 명)	115,689
Real GDP 성장률 추이 (전년대비 증감율, %)	07년	08년	09년	수출 (09년, 십억 US\$)	164
	9.0	7.4	7.4	수입 (09년, 십억 US\$)	268
주요산업	1차산업 17%, 2차산업 28.2%, 3차산업 54.9% 섬유, 화학, 식품가공, 철강, 운수장비, 시멘트, 소프트웨어, 의약 등				

태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 (09년, 십억 US\$)	264			인구 (09년 추정, 만 명)	6,599
Real GDP 성장률 추이 (전년대비 증감율, %)	06년	07년	08년	수출 (08년, 십억 US\$)	154
	4.9	2.5	-2.2	수입 (08년, 십억 US\$)	119
주요산업	1차산업 11.6%, 2차산업 43.3%, 3차산업 45.1% 관광, 섬유 및 의류, 농업, 음료, 담배, 시멘트, 경공업, 가구, 자동차 등				

나.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이 서술되어 있는 제3부, 4. 피투자펀드에 관한 사항 중 ‘5. 투자위험’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주된 투자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투자신탁의 투자 원금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투자자들을 제외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외국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유가증권, 등급이 낮은 유가증권 및 이에 상당하는 등급이 없는 유가증권은 등급이 높은 유가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주된 투자위험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환율위험을 헤지하고 목표 환헤지 비율은 약 90% 수준이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주된 투자위험
분산투자 관련위험	오직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투자자산에 대한 거래비용이 다른 국가에서 보다 더 높고 유동성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현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 또는 투자형태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특히 대규모 거래)라고 할 지라도 대형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투자신탁의 운용비용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투자신탁 선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어느 한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적어지는 대신에 많은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권 가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전부 혹은 일부를 신흥시장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증권이 선진국 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이 더 심하고,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일부 시장은 여전히 초기 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 지역의 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및 규제와 관련된 신흥시장의 위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는 신흥시장에 적용되는 공통적 주안점에 대한 설명 및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할 대표적인 투자대상 시장 및 그러한 시장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시장위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투자대상 시장 또는 그러한 시장과 관련되는 위험에 대한 예시에 불과하며 모든 투자대상 시장 또는 그러한 시장과 관련되는 모든 위험을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본 증권신고서(등록신청서 및 투자설명서)상에 피력된 모든 견해는 본 증권신고서(등록신청서 및 투자설명서)의 작성일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본 증권신고서(등록신청서 및 투자설명서)작성일 이후 발생한 시장변동이나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흥 국가에 대한 공통적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적 불확실성 - 몇몇 신흥 시장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위축시켰고 장기적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률 및 규제 - 이머징마켓은 일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와 법제인프라가 선진국처럼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유동성 - 이머징 회사채시장의 특성상 일부 채권은 발행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수의 투자자들이 채권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특정채권의 경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는 특정채권을 매수 혹은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통화 리스크 - 동 펀드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고 해당국의 통화가치가 변화하는 경우, 펀드의 자산가치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이 미 달러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동 펀드는 통화 리스크가 낮은 편입니다.

구 분	주된 투자위험
	주요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중국경제는 주요 이머징마켓으로서 높은 GDP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둔화와, 과열·자산버블 방지를 위해 올해 초 취해진 정책긴축으로 인해 단기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정부는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키되, 경기 경착륙은 피하기 위해 수 많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기가 좀더 확고한 기반 위에 설 때까지 단기적으로는 완화적인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경제는 대부분의 다른 아시아국가보다 수출의존도가 낮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경기하락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정부가 경제개혁에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력적 투자처로 부상했습니다.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적 위험으로는 급성장으로 인한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비교적 낮은 금리 수준을 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인프라는 여타 아시아국가에 비해 열악하고, 다수의 산업이 외국인투자제약 등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지배구조는 개선되고 있으나, 이머징마켓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 인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아시아 지역 내 주요 이머징 경제로서 급속한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부터 스스로를 잘 방어하기는 했지만, 내수는 기후 이상으로 인한 농업피해 등 국내적 충격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부족이 물가상승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도 우려사항입니다. 내수경기가 회복을 지속하고 있어, 자본유입 증가로 인한 루피화 절상압력이 예상됩니다. 태국 근년 들어 태국시장이 안고 있는 주요 리스크는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시위가 폭력성을 띠고 있고, 정부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흐름과 관광활동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및 긍정적인 부채비율을 고려할 때 태국의 국제신용도는 여전히 우수합니다. 필리핀 필리핀의 최대경제이슈는 여전히 재정개혁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예산적자가 주요 우려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2013년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운 구조적 개혁을 시행하여 세수를 증대해야 합니다. 최근 선출된 행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진전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신뢰감을 외국인 투자자들에 심어 주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옵션매도로 인한 손실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는 투자신탁재산에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위험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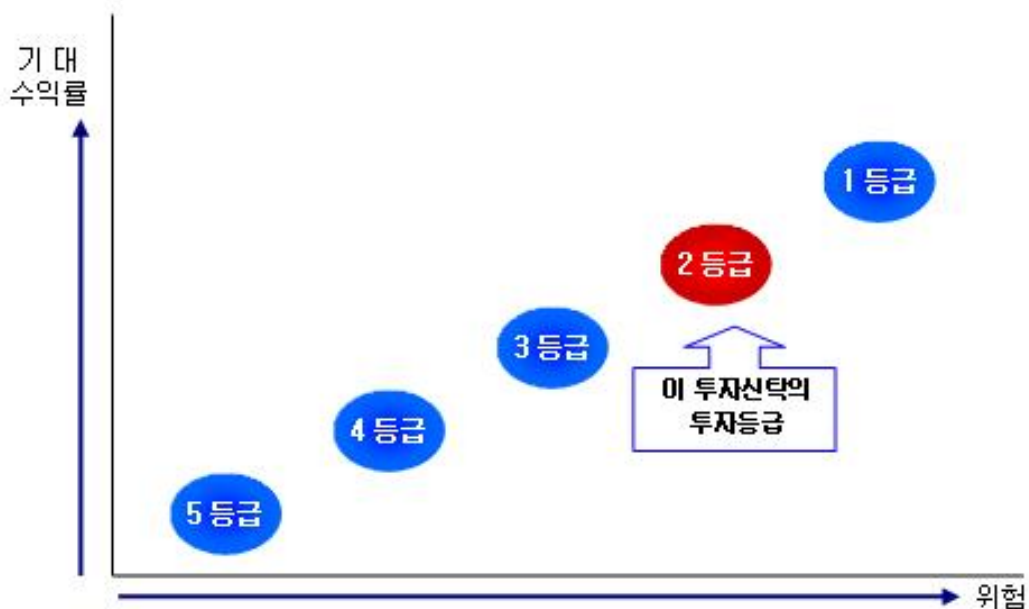
구 분	주된 투자위험
	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조정정책 관련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가격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펀드의 대량 매입과 환매에 관련되는 비용을 당일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장기 투자자들을 희석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합니다. 즉,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특정일에 투자자의 거래 금액 및 유형에 따라 기준가가 인위적으로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인위적인 조정에 따라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가격조정정책으로 인한 기준가의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가격조정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3 부, 4. 피투자펀드에 관한 사항, 9.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대한 내용 중 ‘가격조정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모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채권 (고수익·고위험 채권) 투자위험	모투자신탁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인 하이일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 하이일드 채권 등은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일드 채권 등은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에서 매각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디폴트스왑 (CDS) 투자위험	이 계약은 기초증권 또는 증권바스켓의 인정된 신용도에 따라 시가가 변동하는 신용파생상품을 말합니다. 보장(protection)의 매도시, 펀드는 기초증권 또는 증권바스켓을 실제 매입한 것과 유사한 기초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합니다. 보장(protection)의 매입시, 기초증권(또는 증권바스켓 중 어느 한 증권)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펀드는 스왑계약 원금과 채무불이행 발생 시점 현재 시장에서 결정된 기대회수가치 간의 차액에 기초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액을 수령합니다. 스왑계약은 당사자 양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위험 경감을 위해 담보약정이 이루어 집니다. CDS 의 계약위험은 ISDA 표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감될 수 있습니다. CDS 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기초 증권(들) 보다 유동성이 더 낮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CDS 포지션의 청산 능력 및 청산가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환위험	이 투자신탁은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 이 투자신탁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할 때까지 시차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기회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할 경우 투자대상 자산 및 투자대상 자산의 비율이 달라져 투자위험도 이 투자신탁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고 전환신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주된 투자위험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

구 분	주된 투자위험
	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위험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적용일 및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시장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참고로,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위험 등급 분류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위험 등급]

위험등급	위험수준	내용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전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초과)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 채무증권(BB+ 등급 이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같은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이하)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과 유사한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등급	중간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보다 낮은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주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 REITs,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고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다만, 고위험자산을 기초로 하는 인덱스펀드(ETF 포함)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자체적인 기준 및 운용전략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 2)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중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주 3)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저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주 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 5) 위에 명시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사 자체 내부 위험등급 심의위원회(상품심의위원회) 에서 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위험분류 및 위험등급 범위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대한 절대적인 분류기준은 아닙니다.

※ 시간경과에 따라 투자대상이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실제 편입비를 고려하여 향후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0 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과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수익증권의 매입

- (가) 투자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영업일에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업일의 오후 5시까지 수령된 주문 및 자금은 해당 영업일에 처리되며, 영업일의 오후 5시 경과 이후에 수령된 주문 및 자금은 다음 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매수청구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소정의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실 또는 결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최소매입금액: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업자가 최소매입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수익증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 종류 A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 종류 C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 종류 C-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종류 CP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퇴직연금 및 개인 퇴직계좌 가입자
- 종류 I 수익증권 :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투자하는 개인,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투자하는 법인
- 종류 F 수익증권 : 기관투자자, 기금, 10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개인, 50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법인, 집합투자기구, Wrap Account 계정, 특정금전신탁
- 종류 N 수익증권 : 모두자신탁의 초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하는 해외계열사

(라) 투자자가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당일 포함)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판매가격은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오후 5시 경과 이후에 수령한 매입 주문 및 자금납입은 판매회사가 주문을 실제로 수령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처리됩니다.

(마)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제2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해 외화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이하 "평가시점"이라 합니다)에 있어서의 최종시가(또는 "제2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일의 공정가액)를 사용해 해당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2) 매입관련 유의사항

(가) 과도한 매매의 제한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목표로 설정 및 운용되며 과도한 매매를 지양합니다. 투자재산에 대한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전략을 방해하고 운용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신탁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시차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자, 또는 당해 투자자가 단기매매나 과도한 매매 패턴을 보이거나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방해가 되거나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투자자들의 수익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90 일미만 동안 보유하는 거래는 과도한 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업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과도한 매매를 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를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거래내역 및 공동으로 관리되는 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 (가)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당해 투자신탁 신탁계약, 동 설명서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나)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각 영업일에 오후 5시까지 수익증권 환매 주문을 수령합니다. 판매회사가 오후 5시 경과 이후에 수익증권 환매요청을 수령한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자금으로 환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에 모두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라)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나)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마)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익증권의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자가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청구한 날(판매회사의 영업일임. 당일 포함)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환매대금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포함)로부터 제 8 영업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10 영업일까지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환매대금은 관련되는 환매수수료 및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됩니다.

오후 5 시 경과 후에 수령한 환매청구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실제로 청구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처리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실제로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제 9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11 영업일까지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및 모두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각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포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두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명칭(클래스)	지급비율 (연간, %)
	환매 수수료

종류 A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 C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e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P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I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F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N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합니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4) 환매관련 유의사항

(가)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기준일의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전의 날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나)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환매가 연기된 경우
- 다.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라. 전쟁, 홍수, 폭풍, 테러 또는 기타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이내에 환매연기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환매연기일로부터 6 주 이내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②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⑥항 2.호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릅니다).
 1.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일부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 ③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⑥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수익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환매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제①항, 제⑤항 및 제⑥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 환매연기 기간 동안 매수 및 환매신청의 처리

상기(나)에 따른 환매연기 이후, 환매연기 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제1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상기(나)에 따른 환매연기 기간 동안에는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

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 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증권의 일부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전환

(1) 수익증권의 전환

- (가)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수(이하“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 (나) 전환대상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 ① 피델리티 월지급식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다) 수익자가 전환대상 투자신탁 간에 전환하는 경우 전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라) 수익자가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마)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서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에 따라 취득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전환처리일을 매수일로 하여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2) 수익증권의 전환방법 및 절차

수익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가) 전환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3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8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환매합니다. 다만,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10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11영업일)까지 환매합니다.
- (나) 전환시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8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8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매수합니다. 다만, 위 (가) 항 단서에 따라 환매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환매금이 지급되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당일 매수합니다.

(3) 전환관련 유의사항

- (가) 수익자가 전환대상 투자신탁 간에 전환을 하는 경우,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 간에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 (나) 수익자는 판매회사가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판매하지 않거나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기 이전에 전환을 원하는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해당 수익증권이 판매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전환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환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다른 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에 따라 취득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전환처리일을 매수일로 하여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라) 수익자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이는 판매회사 정책이나 전산 시스템 등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판매회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위 11. 나. (4)의 환매관련 유의사항은 전환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수익자는 투자대상 투자신탁 간에 전환하는 경우 환매의 경우에 준하여 당초 보유하고 있던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이익에서 관련 보수,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매입청구, 환매청구 및 전환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환매청구, 및 전환청구의 취소(정정)는 해당 매입청구일, 환매청구일, 및 전환청구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의 산정 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당해 종류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집합투자업자는 통보 받은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일 공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자신들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준가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결정되며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단,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각 종류 수익증권간 부과되는 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각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법 제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 단 변동 가능함)의 최종시가 또는 평가일의 공정가액(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을 사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자산의 종류	평 가 방 법
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 등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에 공표된 가격
비상장 주식, 채무증권, 장외파생상품 등	취득가격, 거래가격 및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정보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격, 환율 등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부실화된 자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1) 당해 투자신탁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율
----	------	------

		선취 판매 수수료	후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¹⁾	전환 수수료
종류 A	투자자자격에 제한없음	0.7%이하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
종류 C	투자자자격에 제한없음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e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가입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I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까지 투자하는 개인, 최소 50억 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투자 하는 법인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F	기관투자자, 기금, 100억원을 초 과하여 투자하는 개인, 500억원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법인, 집 합투자기구, Wrap Account 계정, 특정금전신탁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N	모투자신탁의 초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하는 해외 계열사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 입시	-	환매대금지급시 (판매회사는 환 매수수료를 펀드 에 반환함)	-

1)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 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함)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 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 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

피델리티 월지급식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 수수료	후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¹⁾	전환 수수료
종류 A	투자자자격에 제한없음	0.7%이하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
종류 C	투자자자격에 제한없음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e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I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까지 투자하는 개인, 최소 50억 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투자 하는 법인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F	기관투자자, 기금, 100억원을 초 과하여 투자하는 개인, 500억원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법인, 집 합투자기구, Wrap Account 계정, 특정금전신탁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 입시	-	환매대금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 수수료를 펀드에 반환함)	-

- 1)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 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함)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 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 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종류 C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	-	-	-
종류 C-e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	-	-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입시	-	환매대금 지급시	-

(2) 모투자신탁

구분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고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	선(후)취 판매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여기서 “수익자”란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투자신탁을 말함
	환매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가 부과됩니다.
-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이 발생합니다.
-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증권거래비용은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위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및 투자신탁과 관련한 납세신고서 작성비용
2.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3.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4.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고의, 과실, 신탁계약 위반

- 없이 투자신탁 관련 소송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을 포함)
5.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6.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종류별 총보수·비용 비교]

명칭 (클래스)	지급비용(연간, %)							
	집합투자 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합성 총보수· 비용 비율	증권거 래비용
종류A	0.1000	0.6500	0.0400	0.0250	0.0200	0.8350	1.2350	0.0000
종류C	0.1000	1.0000	0.0400	0.0250	0.0200	1.1850	1.5850	0.0000
종류C-e	0.1000	0.8500	0.0400	0.0250	0.0200	1.0350	1.4350	0.0000
종류CP	0.1000	0.5000	0.0400	0.0250	0.0200	0.6850	1.0850	0.0000
종류I	0.1000	0.3000	0.0400	0.0250	0.0200	0.4850	0.8850	0.0000
종류F	0.1000	0.0500	0.0400	0.0250	0.0200	0.2350	0.6350	0.0000
종류N	0.1000	0.0000	0.0400	0.0250	0.0200	0.1850	0.5850	0.0000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사유발생시	-	피투자펀드 의 보수 0.40%로 예 상-	사유 발생시

- ※ 기타 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등에 해당하는것으로, 이 투자신탁은 증권신고서 최초제출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재간접형이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용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연 0.40%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종류별 총보수·비용 비교]

피델리티 월지급식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명칭 (클래스)	지급비용(연간, %)							
	집합투자 업자 보 수	판매회 사 보 수	수탁회 사 보 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합성 총보수· 비용 비율	증권거 래비용
종류A	0.1000	0.6500	0.0400	0.0280	0.0200	0.8380	1.2380	0.0000
종류C	0.1000	1.0000	0.0400	0.0280	0.0200	1.1880	1.5880	0.0000
종류C-e	0.1000	0.8500	0.0400	0.0280	0.0200	1.0380	1.4380	0.0000
종류I	0.1000	0.3000	0.0400	0.0280	0.0200	0.4880	0.8880	0.0000
종류F	0.1000	0.0500	0.0400	0.0280	0.0200	0.2380	0.6380	0.0000
지급시 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사유발생 시	-	피투자펀드 의 보수 0.40%로 예상	사유 발생시

- ※ 기타 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등에 해당하는것으로, 이 투자신탁은 증권신고서 최초제출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재간접형이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용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연 0.40%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합성 총보수 ·비용 비율	증권거 래비용
종류C	0.1000	0.6000	0.0400	0.0250	0.0200	0.7850	1.1850	0.0000
종류C-e	0.1000	0.5000	0.0400	0.0250	0.0200	0.6850	1.0850	0.0000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사유발생시	-	피투자펀드 의 보수 0.40%로 예 상-	사유 발생시

- ※ 기타 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등에 해당하는것으로, 이 투자신탁은 증권신고서 최초제출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재간접형이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용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연 0.40%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2)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모투자신탁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모투자신탁에는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이 발생합니다.
- 모투자신탁에는 증권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보수·비용 비교]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피델리티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집합투자업자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판매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수탁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기타 비용	0.0005	사유발생시 지급됨
총 보수·비용	0.000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피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0.4005	
증권거래비용	0.0000	사유발생시 지급됨

- ※ 기타 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등에 해당하는것으로, 이 투자신탁은 증권신고서 최초제출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신탁계약에서 기재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재간접형이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 보수·비용 비율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율(연 0.40%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예상비용은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비용은 실제운용비용 및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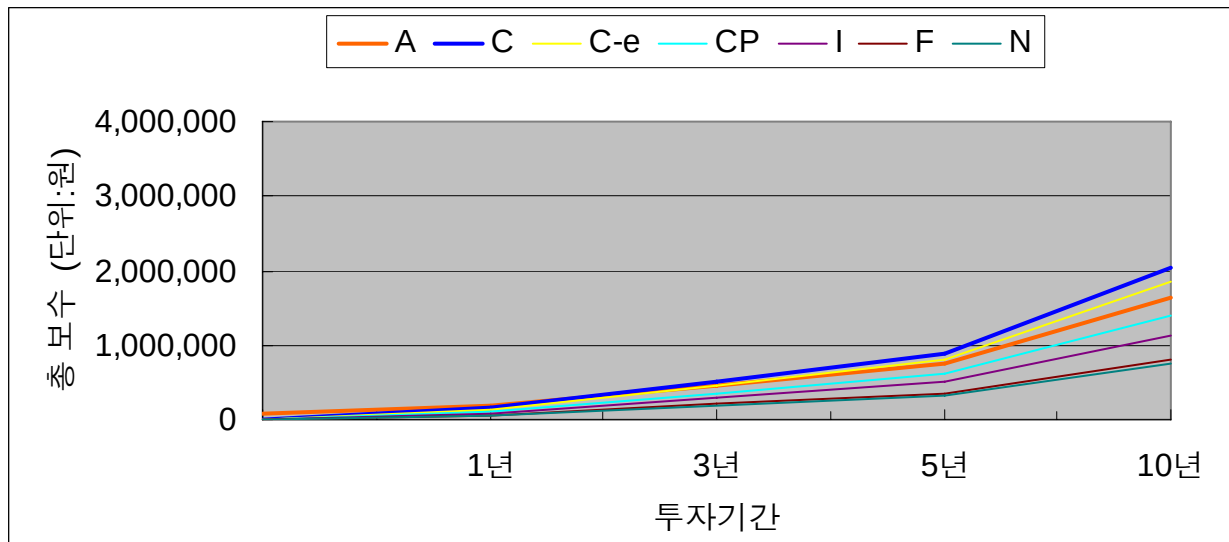
피델리티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자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종류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4,495	337,417	539,089	1,138,400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5,204	465,754	764,036	1,650,442
종류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1,447	382,860	671,069	1,527,541
종류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2,441	512,096	897,590	2,043,167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6,074	334,397	586,123	1,334,182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7,068	463,632	812,644	1,849,807
종류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0,203	221,316	387,917	883,009
종류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1,198	350,551	614,438	1,398,635
종류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9,706	156,698	274,657	625,196
종류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0,701	285,934	501,178	1,140,822
종류 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084	75,926	133,081	302,930
종류 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5,079	205,161	359,602	818,556
종류 N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960	59,771	104,766	238,477
종류 N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9,955	189,007	331,287	754,103

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보수 포함)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예상비용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설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선취판매수수료는 종류A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종류별 총보수 비용 추이 및 총보수 비용이 일치 하는 시점의 선형그래프]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이익 등의 배분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수익자에게 분배하되, 수익자는, 수익자가 달리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신탁계약 제14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또한, 수익자가 이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당일포함) 제11영업일 전에 판매회사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분배관련 유의사항

(가)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시 상환금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등을 공제한 후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합니다. 판매회사는 해당 모든 조세 및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이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로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이 때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14%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함).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 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벤

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 및 모두자신탁이 이와 같은 매매·평가 손익을 자투자신탁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는 투자대상 투자신탁 간에 전환하는 경우 환매의 경우에 준하여 당초 보유하고 있던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이익에서 관련 보수,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보다 큰 경우(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부분이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임)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지방소득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한도법인세율 22%, 지방소득세 2.2%,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최고한도법인세율 20%, 지방소득세 2%)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될 예정입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현재 집합투자기구 설정 전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해당사항 없음

나. 대차대조표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현재 집합투자기구 설정 전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현재 집합투자기구 설정 전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현재 집합투자기구 설정 전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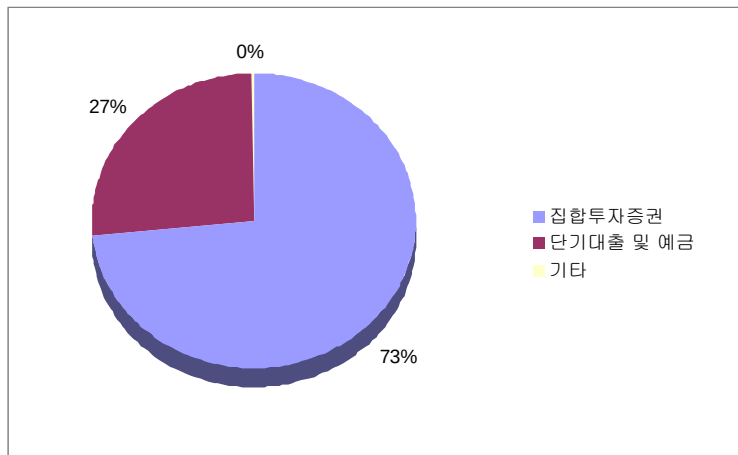
[모투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

피델리티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2011년 1월 31일 기준)

통화별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미국 달러	0 (0.00)	0 (0.00)	0 (0.00)	163 (73.62)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63 (73.62)
한국 원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59 (26.65)	-1 (-0.26)	58 (26.38)
합계	0 (0.00)	0 (0.00)	0 (0.00)	163 (73.62)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59 (26.65)	-1 (-0.26)	222 (100.00)

(주)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임



4. 피투자펀드에 관한 사항

피델리티펀드 - 아시아하이일드펀드 (“피투자 펀드” 또는 “하위펀드”)

1. 개요

피델리티펀드는 SICAV(변동자본투자회사)로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개방형 투자회사입니다. 펀드의 자산은 각기 다른 하위펀드에 의해 보유됩니다. 각 하위펀드는 고유의 투자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개별적인 증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주식의 클래스는 하위펀드별로 발행됩니다.

피델리티펀드는 1990년 6월 15일에 룩셈부르크에서 설립되었습니다. 피델리티펀드 및 그 정관(이후 개정본 포함)(이하 “정관”)은 제 B34036 호로 룩셈부르크 상업등기소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정관은 룩셈부르크법에 따라 주주가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1990년 8월 21일에 메모리얼을 통해 공시되었습니다. 2005년 8월 3일자 최근 정관은 2005년 8월 10일에 메모리얼을 통해 공시되었습니다. 주주들은 펀드의 정관 및 그 개정본에 기속됩니다.

피델리티펀드의 자본금은 순자산가치에 해당합니다.

룩셈부르크법에 의거 피델리티펀드는 무제한 수의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수권받습니다. 각 주식은 발행시에 완전 납입되어 더 이상의 주금 납입의 의무를 지우지 아니합니다. 어떤 주식도 우선권, 우선매수권 또는 전환권(하위펀드간 또는 주식 클래스간 전환권 제외)을 갖지 못합니다.

어느 하위펀드의 모든 주식은, 기명인지 무기명인지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와 특권을 가집니다. 어느 하위펀드의 각 주식은 그 하위펀드의 주식에 대해 선언된 배당과 기타의 분배에 그 하위펀드의 다른 주식과 동등하게 참여할 자격이 있으며 또한 그 하위펀드의 해지나 피델리티펀드의 청산의 경우, 그 하위펀드의 청산대금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주주는 피델리티펀드의 주주총회, 그 하위펀드의 주주총회와 클래스 주주총회에서 하나의 표결을 가집니다.

어떤 주식도 그와 관련하여 발행된 옵션이나 특수한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적용 법률에 의해, 주주는 피델리티펀드에 신청함으로써 언제든지 무기명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전환할 자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추가 주식 발행이 피델리티펀드 전체에 또는 주식 발행이 제한된 하위펀드의 주식을 보유한 자들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관 제 7 조에 따라 그리고 상기의 중요사항에 기재된 시차활용반대 조항에 따라 주식의 발행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어느 특정 시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하위펀드와 주식 클래스에 관한 정보는 피델리티펀드의 등록사무소 및 판매대행회사의 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룩셈부르크 주식거래소에 상장됩니다. 다른 주식거래소에 상장할지 여부는 수시로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장대리인은 2, Boulevard Konrad Adenauer, L-1115 Luxembourg 소재 Deutsche Bank Luxembourg S.A.입니다.

다음의 서류는 피델리티펀드의 등록사무소에서 어느 영업일의 통상적인 영업시간 동안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서류들은 2002 년 법의 번역과 함께 판매대행회사의 사무소에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0 년 12 월 17 일 룩셈부르크(“2010 년 법”)이 2002 년 12 월 20 일 룩셈부르크법(“2002 년 법”)을 대체합니다. 다만, 2010 년 법은 2011 년 7 월 1 일자로 시행됩니다.)

1. 피델리티펀드의 정관
2. 대행 계약서
3. 자산보관계약서
4. 판매대행계약서
5. 자산운용계약서
6. 서비스계약서
7. 지급대행계약서
8. 홍콩대표사무소계약서
9. 간이투자설명서
10. 재무제표

정관(이후 수정본 포함)은 현재 대표사무소의 사무소에서도 열람가능합니다.

펀드의 글로벌 투자설명서, 최근 간이투자설명서, 최근 재무보고서의 부분은 요청시 피델리티펀드의 등록사무소와 판매대행회사의 사무소에서 무료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펀드의 정관 및 그 개정본에 기속됩니다.

피델리티펀드의 본국 감독당국은 110, route d'Arlon, L-2991 Luxembourg 에 소재한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CSSF”)입니다.

피델리티펀드 및 피투자펀드는 2009. 5. 3. 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였으며, **관련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2. 투자목적

피투자펀드는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발행인의 투자적격등급 이하의 하이일드 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경상수익(current income)과 자본이득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종류의 채무성 증권에는 높은 위험이 수반되고 그러한 채무성 증권은 최저신용등급 기준에 부합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채무성 증권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투자적격등급 이하의 증권은 Standard & Poor's 로부터 BB+ 이하의 등급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등급을 받은 증권을 말합니다.

3.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채권투자

피투자펀드의 목적은 투자자들에게 자본이익의 가능성과 더불어 비교적 고수익(high income)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피투자펀드는 아래 ‘4. 투자제한’에 자세하게 열거된 국가 및 공공 단체가 보증하거나 발행한 증권에 펀드 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는 특히 정부, 정부기관, 국제단체, 비공개/공개 회사, 특수목적 또는 투자기구나 신탁이 발행하는 채권 및 기타 채무증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이나 채무증서는 고정/변동 이표(coupons)를 지급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한 변동적 요소는 시장금리나 기타 자산(자산유동화증권 등)의 성과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자산유동화증권과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펀드 순자산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한도는 미국정부나 미국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은 미리 정한 일자에 상환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 발행인의 재량(저당채권 등)에 따라 상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이나 채무증서에 다른 자산으로의 전환 또는 청약권이 부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전환채권 등). 모든 채권이나 채무증서가 하나 이상의 채권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며, 일부 채권의 경우 투자적격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은 채권일 수 있습니다.

피투자펀드는 피투자펀드의 기준통화 이외의 통화로 발행된 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선물환계약과 같은 기법을 활용하여 외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습니다.

(2) 현금보유

적용법률상 요구되는 투자에 대한 제한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수적으로 피투자펀드는 현금 및 현금 등가물(단기금융상품 및 정기예금을 포함)을 해당 펀드의 순자산의 49%까지 보유할 수 있으나 동 보유비율은 이사회가 주주의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과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펀드는 2002 년 법 상 단기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 미미한 익스포저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10 년 12 월 17 일 룩셈부르크(“2010 년 법”)이 2002 년 12 월 20 일 룩셈부르크법(“2002 년 법”)을 대체합니다. 다만, 2010 년 법은 2011 년 7 월 1 일자로 시행됩니다.)

(3) 파생상품 투자

피투자펀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 (a) 거래가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실현되는 등 거래가 경제적으로 적정할 것
- (b) 거래의 목적이 이하 각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
 - (i) 리스크의 축소
 - (ii) 비용의 축소
 - (iii) 해당 채권형 하위펀드의 위험 프로파일 및 아래 ‘4. 투자제한’에서 정한 위험분산원칙과 부합하는 정도의 위험범위 내에서 해당 펀드의 추가적인 자본이득 또는 수익(income)의 창출
- (c) 거래에 따르는 위험이 펀드의 위험관리절차를 통해 적절하게 관리될 것.

금융파생상품은 장내의 옵션, 금리 및 채권 선물, 금리스왑, 신용디폴트스왑 (싱글네임 및 바스켓), 인플레이션 지수스왑, 선도계약 및 이를 결합한 거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투자펀드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금융파생상품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거나 복잡한 파생상품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신중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파생상품에는 전통적인 투자방법에 따르는 위험과 상이하거나 일부 경우에는 그 보다 큰 위험이 수반됩니다. 파생상품의 활용은 기준가격의 더 큰 변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파생상품 활용에 수반되는 제반 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5.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투자펀드의 기준통화는 USD 입니다.

(4)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중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현금이나 국채 보다는 높은 자본성장을 추구하거나 자본성장과 수익(income)의 혼합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주로 적합합니다.

4. 투자제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들은 위험분산 원칙에 근거하여 또한 정관 및 룩셈부르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델리티펀드와 각 하위펀드를 위한 법인방침과 투자정책 및 수시로 적용되는 투자제한을 정할 수 있는 총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가. 투자제한

I. 1. 펀드는 이하 각 호의 투자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a) 적격시장에서 공식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 b) 최근에 발행된 양도성 증권/단기금융상품으로서 적격시장에 공식 상장 신청을 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었으며, 발행일로부터 1 년 내에 동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 보증되어 있는 증권
 - c) UCITS 및/또는, EU 회원국에 소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UCI 가 발행한 수익권/주식. 다만, UCI 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률에 의거 인가되어 있거나 또는 캐나다, 홍콩,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또는 미합중국의 법률 등 CSSF 가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을 것.
 - UCITS 의 수익자/주주 보호를 위한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자/주주 보호가 이루어질 것. 특히 자산분리(asset segregation), 차입, 대출,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담보되지 아니한(uncovered) 매각에 관한 규정들이 directive 85/611/EEC 에서 정하는 요건과 동등할 것.
 - 보고 대상 기간 동안의 자산, 부채, 수익 및 영업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영업 보고가 매 반기별 및 매년 단위로 이루어 질 것.
 - 다른 UCITS 또는 다른 UCI 의 수익권에 투자되는 총액은 수익권의 취득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설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해당 UCITS 또는 UCI 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d) 만기가 12 개월 이내이고 요구시 지급 받을 수 있거나 즉시 인출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서 OECD 회원국이나 FATF 국가 등 CSSF 가 인정한 국가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있는 신용기관에의 예금
 - e)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파생상품 (적격시장에서 거래되는 현금결제상품(equivalent cash settled instruments) 및/또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함)
 - 기초자산(underlying)이 I. 1.에서 정한 상품 또는 하위펀드가 그 투자지침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금융지수, 금리, 외국 환율이나 통화로 구성되어 있을 것.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거래상대방은 건전성 규제(prudent supervision)를 받고 있으며 룩셈부르크 감독당국이 승인한 범주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될 수 있을 만한 평가가 매일 이루어지고 상쇄거래(offsetting transaction)를 체결함으로써 펀드의 책임으로 언제라도 공정시가로 매각, 청산 또는 종결될 수 있을 것.
- 및/또는
- f)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와 예금 보호를 위하여 그 발행자체와 발행인이 규제를 받는 단기금융상품 (적격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기금융상품을 제외함)
 - 중앙, 지방 또는 행정 당국 또는 EU 회원국의 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 EU 또는 유럽의 투자은행, EU 비회원국, 또는 연방 국가(Federal State)의 경우에는 연방을 구성하는 회원국 중 한 국가, 또는 한 국가 이상의 EU 회원국이 가입한 국제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상품
 - 적격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발행 기업이 발행한 상품

- OECD 회원국이나 FATF 국가 등 CSSF 가 인정한 국가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있는 신용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상품
- CSSF 가 승인한 범주에 해당하는 기타 사업체가 발행한 상품. 단, 이러한 상품에 대한 투자가 상기 첫번째, 두번째 또는 세번째 항에서 정한 요건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며, 그 발행인이 EUR 10,000,000 을 초과하는 자본금과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고, 제 4 차 Directive 78/660/EEC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간행하며, 그룹의 파이낸싱을 전문으로 하는 그룹사(1 개 혹은 수개의 상장회사를 포함함)에 속해 있거나 또는 금융 유동성 한도(banking liquidity line)로부터 이익을 얻는 유동화 기구의 파이낸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일 것.

2. 또한, 펀드는 상기 1.에 언급된 바 이외의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하위펀드 순자산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II. 펀드는 하위펀드 순자산의 49%까지 부수적으로 유동자산(liquid asset)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들이 주주들의 최상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III. 1. a) 펀드는 동일 발행인이 발행한 양도성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에 하위펀드 순자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 b) 펀드는 동일 기관에의 예금에 해당 하위펀드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 c)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있어 어느 하위펀드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평가액은 거래상대방이 상기 I. 1. d) 에 명시된 신용기관인 경우 자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자산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나아가, 단일발행기관에 특정 하위펀드 자산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특정 하위펀드를 대리하여 펀드가 보유하는 이러한 발행기관들의 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상품의 총합계액은 당해 하위펀드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기한 제한은 건전성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예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에서 정한 개별 한도에도 불구하고, 펀드는 개별 하위펀드별로 개별 하위펀드 자산의 20%를 초과하게 되는 다음 각 호의 투자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 단일 발행인이 발행한 양도성 증권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 단일 발행기관에 대한 예금 및/또는
- 단일 발행인과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평가액

3. 상기 1. a)에 명시된 10%의 투자 한도는 EU 회원국, 동 회원국의 지방 정부, 기타 적격국가 또는 EU 회원국 중 한 국가 이상이 가입해 있는 국제공공기관이 발행하였거나 보증한 양도성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는 35%까지 완화됩니다.

4. 상기 1. a) 에 명시된 10%의 투자 한도는 EU 회원국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있는 신용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법에 의거 수익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공적 감독을 받는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25%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기 채권의 발행대금이 법에 따라 동 채권의 만기일까지 동 채권에 대한 청구(claims)를 담보할 수 있고 발행인의 파산시 동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에 우선적으로 충당될 자산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하위펀드가 단일 발행인이 발행한 전술한 채권에 그 자산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그러한 투자의 총 가액은 그 하위펀드의 순자산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펀드는 위험 분산의 원칙에 따라 EU 회원국, 동 회원국의 지방 정부나 행정당국, OECD 회원국, 또는 EU 회원국 중 한 국가 이상이 가입해 있는 국제공공기관이 발행하였거나 보증한 양도성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에 펀드 순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하위펀드는 최소한 6 개 이상 종목의 증권을 보유하여야 하며 어느 한 종목의 증권이 당해 하위펀드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5. 상기 3.과 4.에 언급된 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상품은 상기 2.에 명시된 40%의 한도 산정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1. 2. 3. 및 4.에 명시된 한도는 합산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동일 발행인이 발행한 양도성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 이러한 동일 발행인에의 예금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위펀드 자산의 3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Directive 83/349/ECC 또는 공인된 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정의된 바와 같은 연결 재무제표 작성 목적상 동일 그룹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III.에 명시된 투자 한도 산정시 단일 발행인으로 간주됩니다.

펀드는 동일 그룹이 발행한 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상품에 누적하여 하위펀드 순자산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IV. 1. 이하 V.에서 명시된 투자제한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III.에 명시된 투자한도는 단일 발행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지수의 구성이 충분히 분산되어 있고, 참조 대상 시장에 대한 적절한 벤치마크를 대표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공시가 이루어지고, 해당 하위펀드의 투자방침에 따라 공개되는 특정 주가지수나 채권지수의 구성을 모방(replicate)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및/또는 채권에 대해서는 20%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1.에서 정한 투자 한도는 양도성 증권이나 단기금융증서의 주요 거래시장인 정규시장 등에서의 예외적인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5%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한도는 단일 발행인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 V. 1. 펀드는 발행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펀드는 다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동일 발행인의 무의결권주 10% 이상
- 동일 발행인의 부채성 증권 10% 이상
- 동일 발행인의 단기금융상품 10% 이상

3. 위 두번째 및 세번째 항에 따른 한도는 만일 취득시에 부채성 증권의 총계 또는 단기금융상품의 총계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점에 있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V.의 규정은 EU 회원국, 동 회원국의 지방정부 또는 EU 비회원국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상품 및 EU 회원국 중 한 국가 이상이 가입해 있는 국제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자산을 주로 당해 국가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발행기관의 증권에 투자하는 EU 비회원국에 설립된 발행인의 자본 주식으로서, EU 비회원국인 발행인의 투자정책에 있어서 III. V. 1. 및 2., 그리고 VI.에서 정해진 한도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 국가의 입법에 따라 그러한 소유가 펀드가 당해 국가에 설립된 발행기관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한 투자제한은 펀드가 주주들의 요청에 따른 주식의 환매와 관련하여 오로지 펀드 또는 해당 하위펀드를 대신하여 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의 관리, 자문 및 마케팅 사무만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의 자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VI. 1. 펀드는 I. 1. c)에서 정의하는 UCITS 및/또는 기타 UCI 수익권/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어느 하위펀드 순자산 총계의 10% 이상을 UCITS 및 UCI 수익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펀드는 순자산의 10% 이상을 다른 UCITS 및 다른 UCI 수익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투자제한의 적용 목적상 다수의 하위펀드를 가진 UCI 의 각 하위펀드는 개별적인 발행인으로 간주됩니다. 단, 제 3 자에 대한 각 하위펀드 채무의 분리 원칙은 이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2. 펀드가 투자하는 UCITS 또는 다른 UCI 가 보유하는 기초투자자산은 상기 III.에 명시된 투자제한의 목적상 고려될 필요가 없습니다.
3. 펀드가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혹은 운용위탁을 통해 운용하는 UCITS 및/또는 다른 UCI 의 수익권이나 또는 공동의 관리 또는 지배에 의하여 또는 직간접적인 상당한 지분 소유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연계된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이러한 UCITS 및/또는 UCI 수익권에 대한 투자를 이유로 어떠한 청약수수료나 환매수수료도 펀드에 부과될 수 없습니다.

펀드가 그 자산의 대부분을 전 항에 기재된 펀드와 연계된 UCITS 및/또는 다른 UCI 의 수익권에 투자하는 경우 동 펀드 및 해당 UCITS 또는 다른 UCI 각각에 대하여 부과되는 운용보수(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성과보수는 제외)는 해당 순운용자산의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펀드는 해당 기간 동안 해당 펀드 및 펀드가 투자하는 UCITS 및 다른 UCI 에 대하여 부과되는 운용보수를 그 연차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펀드는 동일 UCITS 또는 기타 UCI 의 수익권의 25%이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취득시점에 수익권의 순발행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시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하위펀드를 가진 UCITS 또는 기타 UCI 의 경우 이러한 제한은 당해 UCITS 또는 다른 UCI 가 발행한 모든 수익권에 대하여 모든 하위펀드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VII. 펀드는 파생상품관련 총위험평가액(global exposure)이 해당 하위펀드 순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펀드의 총위험평가액(global risk exposure)은 순자산총액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총위험평가액은 (이하 B. 2.에 기재된 것처럼) 일시차입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10%까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펀드의 순자산총액의 2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험평가액은 기초자산의 현재 가치, 거래상대방 위험, 예상되는 시장 변동 및 포지션 청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 조항은 다음 문단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펀드가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위험평가액이 III.에서 정한 투자 한도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펀드가 지수에 근거한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러한 투자는 III.에 명시된 투자한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파생상품을 수반하는 양도성 증권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의 경우, 당해 파생상품이 본 VII.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VIII. 1. 또한 펀드는 하위펀드의 순자산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하위펀드의 계산으로 차입하여서는 안됩니다. 차입은 은행으로부터 하여야 하고 일시적인 수단으로만 가능합니다. 단 펀드는 백-투-백 대출(back to back loans)을 통하여 외화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펀드는 제3자에게 대출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펀드가 완전히 납입되지 않은 I. 1. c), e) 및 f)에 기재된 양도성 증권, 단기금융상품이나 기타 금융상품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3. 펀드는 양도성 증권, 단기금융상품 또는 기타 금융상품에 대하여 당해 증권 또는 금융상품을 확보하지 않은 채로 (uncovered) 매각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4. 펀드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5. 펀드는 귀금속 및 이를 표창하는 증서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 IX. 1. 피델리티펀드는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양도성 증권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첨부되는 청약권을 행사할 때 상기에 규정된 투자한도비율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분산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최근 설정된 펀드는 그 설정일로부터 6 개월간 III. IV. 및 VI. 1. 2. 및 3.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기 1.에 규정된 투자한도 비율이 펀드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유로 또는 청약권의 행사를 이유로 초과되는 경우, 펀드는 주주들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당해 증권의 매도거래시 최우선 과제로 이러한 상황을 시정해야 합니다.

3. 어느 발행인이 다수의 부문으로 이루어진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각 부문의 자산이 동 부문의 투자자들 및 동 부문의 설정, 운영 또는 청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의 보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될 경우, 각 하위펀드는 III. IV. 및 VI.에서 정한 위험 분산의 원칙상 개별적인 발행인으로 간주됩니다.

나. 기타 안전장치

또한 펀드는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펀드 순자산 총액의 10%까지 단기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일
2. (위 10%내에서) 허용된 차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펀드의 자산을 채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거나, 부담을 지우거나 담보로서 이전하는 일. 단, 하기의 D에 상세히 기술된 바와 같은 금융파생상품과 거래 활용을 위해 증거금을 쌓도록 요구되는 경우 등 펀드로 하여금 자산을 분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투자자일 경우는 제외하고) 다른 회사의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인수를 하거나 참여하는 일
4. 펀드가 자산보관회사, 은행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의해 승인된 예금수납기관에 예금을 하거나 채무수단을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여를 하거나 제 3 자의 의무를 보증하는 일. 증권대여는 본 제한과 관련하여 대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주주 또는 제 3 자에게 워런트 또는 펀드의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기타 권리를 발행하는 경우
6. 이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펀드의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사 또는 당해 회사의 관계인(“용어풀이”에 정의됨)과 포트폴리오 투자자산을 매입, 매도, 차입 또는 대여하거나 당해 회사들과 거래를 수행하는 일.
7. 매매를 목적으로 권리증서에 투자하는 일

다. 위험관리절차

펀드는 언제라도 포지션 위험 및 동 위험과 각 펀드의 전반적인 위험 프로파일과의 일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위험 관리 절차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펀드는 해당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의 가치를 정확하고 독립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절차를 활용합니다. 위험관리제도에 관한 정보는 피델리티펀드의 등록사무소에서 요청시 입수할 수 있습니다.

라. 증권 대차 및 환매조건부매매거래

2002 년 법, 이와 관련된 현재 혹은 장래의 룩셈부르크 법이나 시행규정, 회람 및 CSSF 의 지침(“관련규정”), 특히 (i) 2002 년 법의 정의 규정에 따른 2008 년 2 월 8 일자 대공국 규정 제11 조 그리고 (ii) 양도성 증권 및 단 기금융상품과 관련된 기술과 방법을 활용함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규칙에 관한 CSSF 회람 08/356(이후 개정본이나 후속법령 포함)에서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또한 동 관련규정에서 정한 제한에 따라, 각 하위펀드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을 위하여 (a)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자격으로 환매조건부매매 거래(opérations à réméré) 및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거래(operations de prise/mise en pension)를 체결하거나 (b) 증권 대여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의 요약본은 피델리티펀드의 등록사무소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2010 년 12 월 17 일 룩셈부르크(“2010 년 법”)이 2002 년 12 월 20 일 룩셈부르크법(“2002 년 법”)을 대체합니다. 다만, 2010 년 법은 2011 년 7 월 1 일자로 시행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이 증권신고서에서 정한 하위펀드의 투자목적에 벗어나거나 이 증권신고서에서 정한 위험 프로파일 보다 높은 위험을 초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피델리티펀드는 이러한 거래에 따르는 거래량이 언제라도 환매요구에 응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유지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유럽공동체 법에서 정한 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CSSF 가 인정한 신중한 감독을 받고 있는 자로서 이러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래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권 대여거래에 다른 담보는 (i) 유동자산(현금 및 단기은행증서, 2008 년 3 월 19 일자 Council Directive 2007/16/EC 에서 정한 단기금융상품)과 유동자산 등가물(신용장 및 거래상대방과 계열관계에 있지 아니한 일류 신용기관이 발행한 즉시지급 보증서), (ii) OECD 회원국, 동 회원국의 지방정부 또는 EU, 특정 지역, 전세계적 규모의 국제기구와 기업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iii) 순자산가치가 매일 산정되고 AAA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용등급을 받은 단기금융 UCI 가 발행한 주식이나 수익권, (iv) 이하 (v)항 및 (vi)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권/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UCITS 가 발행한 주식이나 수익권, (v) 적절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일류 발행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또는 (vi) 규제시장 또는 OECD 회원국의 거래소에서 공식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주식 (단, 주요 지수에 포함되는 주식일 것) 중 한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또는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 매매 대상이 되는 증권은 (i)항, (ii)항, (iii)항, (v)항 및 (vi)항에 기재된 형태의 증권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피델리티펀드가 수령한 현금담보는 재투자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증권신고서상 특정 하위펀드에 대하여 명백히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해당 하위펀드가 수령한 현금담보는 해당 하위펀드의 투자목적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a) 순자산가치가 매일 산정되고 AAA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용등급을 받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주식이나 수익권, (b) 단기 은행예금, (c) 상기 2008 년 규정에서 정한 단기금융상품, (d) EU 회원국, 스위스, 캐나다, 일본, 미국 또는 이의 지방정부 또는 EU, 특정 지역, 전세계적 규모의 국제기구와 기업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단기 채권, (e) 적절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일류 발행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및 (f) 상기 CSSF 회람 1.C.a)에서 정한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거래에 재투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재투자로 인하여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재투자금액은 각 해당 하위펀드의 총위험평가액 산정시 고려됩니다.

마. 기 타

1. 피델리티펀드는 보유 증권상 권한인 청약권을 행사할 때 상기에 규정된 투자한도비율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그러한 제한은 피델리티펀드 전체뿐만 아니라 각각의 하위펀드에도 적용됩니다.
3. 상기에 규정된 투자한도 비율이 투자 후 발생한 피델리티펀드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건 또는 행위의 결과로 또는 피델리티펀드가 보유하는 증권상 권한인 청약권의 행사를 이유로 초과되는 경우, 피델리티펀드는 주주들의 최상의 이익에 맞추어 증권매도에 있어서 투자비율을 초과한 당해 증권의 매도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 상기 비율이 특셈부르크법이 부과한 관련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한도가 초과되지 않는 한 그리고 단지 동 초과분에 대해서 펀드는 당해 증권의 처분에 우선권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피델리티펀드는 현금과 기타 유동자산의 투자에 관해 위험분산 방침을 따릅니다.
5. 피델리티펀드는 부동산, 옵션 또는 그와 관련된 이익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않습니다. 단, 피델리티펀드는 부동산 또는 그와 관련된 이익으로 담보되는 증권 또는 부동산 또는 그와 관련된 이익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와 그 관계인은 집합투자업자와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한 타인의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당해 계약에 따라 해당 당사자는 그 성격이 전체적으로 펀드에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펀드의 성과 및 펀드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며, 그 대가로 직접적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으나 대신에 집합투자업자와 관계인이 당해 당사자와 사업 관계를 체결하기로 약정한 바와 같은 상품, 서비스 및 기타 이익(연구 및 자문 서비스 등)을 수시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해 상품과 서비스는 여행, 숙박, 오락, 일반 관리 상품 및 서비스, 일반 사무실 시설 및 부동산, 회원권료, 직원급여나 직접적인 현금 지급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업자와 관계인은 펀드를 대리하여 집합투자업자나 관계인이 어느 브로커나 딜러와 체결한 사업관계와 관련하여 당해 브로커나 딜러가 지급한 현금수수료환급액에 대한 이익(브로커 또는 딜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불하는 현금수수료환급액)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브로커나 딜러로부터 받은 현금 수수료 환급액은 펀드의 계정으로 집합투자업자와 관계인이 보유합니다. 중개수수료율은 통상적인 요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거래는 최적의 거래체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8. 나아가, 각 하위펀드의 투자목적에 기재된 바에 따라 각 하위펀드는 제 2 부의 내용중 ‘투자제한(가.I.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2 년 법 제 41 조 제(2)항 a)호에서 정한 여타 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10% 한도 내에서 대출참가 및/또는 대출양도(레버리지 대출채권(leveraged loans)을 포함)에 순자산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품은 단기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따라서 자금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유동성 있고 언제든지 그 가치가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자금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단기금융상품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2010 년 12 월 17 일 룩셈부르크 (“2010 년 법”)이 2002 년 12 월 20 일 룩셈부르크법(“2002 년 법”)을 대체합니다. 다만, 2010 년 법은 2011 년 7 월 1 일자로 시행됩니다.)

(가) 발행 당시 만기가 397 일(포함) 한도 내에 있을 것

(나) 잔여 만기가 397 일(포함) 한도 내에 있을 것

(다) 최소 매 397 일마다 자금시장 상황에 따라 정기적인 수익률 조정을 거칠 것

(라) 신용위험과 금리 위험을 포함한 위험 유형이 위 (가) 또는 (나)호에 명시된 만기의 금융상품에 해당하거나, 위 (다)호에 기재된 수익률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이러한 대출들은 해당 하위펀드가 주주의 요청에 따라 그 주식을 환매할 의무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기간 내에 제한된 비용으로 매각될 수 있는 경우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기준들을 충족하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평가 시스템이 이러한 대출들에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대출들은 언제라도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대출의 가치가 독립당사자간 거래에서 거래에 정통한 지식을 가지는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들간에 교환될 수 있는 가치여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해당 하위펀드가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

(나) 상각후 취득원가 평가방법에 근거한 시스템을 포함하여 시장 자료나 평가 모델을 기준으로 할 것.

5.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서술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마켓타이밍(Market Timing) 및 빈번한 거래(Excessive Trading)

펀드는 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고자 하기 때문에 활발한 거래를 장려하지 않습니다. 펀드의 계정으로 이루어지는 단기거래나 과도한 거래는 포트폴리오 운용전략을 방해하고 거래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익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델리티의 방침과 사업관행 및 CSSF circular 04/146 에 의거, 펀드와 판매대행회사는 시차활용거래라고 알고 있거나 혹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거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펀드와 판매대행회사는 특히 펀드나 판매대행회사의 견해로 시차활용거래자(market timers) 또는 단기거래나 과도한 거래 유형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들의 거래가 펀드에 불이익을 주었거나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투자자들에 의한 신청 등 펀드에 해롭다고 생각되는 주식매입신청이나 전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상 펀드와 판매대행회사는 펀드 또는 기타 피델리티펀드와 관련한 투자자의 거래기록 및 공동으로 소유,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투자자의 거래기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펀드의 수익률

펀드의 수익률은 아래 ‘6. 펀드성과’ 에 나타나 있습니다. 과거수익률이 반드시 하위펀드의 장래 성과를 나타내지는 않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장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변동

펀드의 보유자산에는 시장 변동 위험 및 증권/기타 금융상품 투자에 따르는 기타 위험이 수반됩니다.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원금의 가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투자자산의 가치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income)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각 하위펀드의 투자목적이 실제로 달성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채권, 채무증서(Debt Instruments) 및 고수익증권 등

채권이나 기타 채무증서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그러한 투자자산의 가치는 시장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 및 유동성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채무증서에 투자하는 펀드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발행자의 신용도, 시장 유동성 및 환율변동(투자자산의 표시통화가 당해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하위펀드의 기준통화와 다를 경우)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펀드들은 수익 실현 가능성은 (투자적격등급 채무증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나 가치하락 위험 및 자본 손실의 실현 위험이 (수익률이 낮은 채무증서에 비해) 상당히 높은 고수익 채무증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위험

일부 하위펀드는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성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성 증권은 신용도 혹은 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기초하여 신용평가기관(Fitch, Moody's, Standard & Poor's)로부터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적격등급의 고정수입증권(fixed income securities)는 Standard & Poor's로부터 BBB-/Baa3 이상 혹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입니다. 다른 유형의 채무성 증권과 마찬가지로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성 증권에는 신용위험이 수반되며, 발생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 동안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하향 조정과 같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등급의 하향조정은 하위펀드가 이러한 증권에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는 한 차례 혹은 수 차례 등급 조정을 거쳐 투자적격등급 이하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증권을 계속하여 보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낮은 등급/무등급 증권

채무증서의 신용도는 대개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됩니다. 중간 및 낮은 등급의 증권 및 이와 유사한 신용도를 가지는 무등급 증권에는 더 넓은 수익률 변화, 더 넓은 매매율차(bid-offer spreads), 더 높은 유동성 프리미엄 및 더 집중된 시장기대가 수반되므로 그에 따라 높은 등급 증권에 비해 시장 가치의 변동 폭이 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급의 변화 또는 이러한 변화에의 기대는 수익률과 시장가치의 (때때로 상당한) 변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집중

기본적으로 오직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하위펀드는 여러 국가에 분산 투자하는 하위펀드 보다 그 국가의 시장, 정치, 법률, 경제 및 사회 리스크에 더 노출이 될 것입니다. 특정 국가의 경우 외환규제를 부과하거나 혹은 당해 국가의 운영 시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및 자산물수와 같은 기타 조치는 투자자산의 매매 및 환매와 같은 하위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의 거래가 중지되거나 투자자들의 수익권 매입이나 환매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 등은 하위펀드의 보유자산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침으로서 해당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여러 국가에 걸친 투자분산이 환위험과 같은 여타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투자자산에 대한 거래비용이 다른 국가에서 보다 더 높고 유동성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및 조세위험

일부 관할지의 경우, 법령의 해석과 그에 따른 주주의 권리 행사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계 감사 기준, 보고 관행 및 공시 요건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하위펀드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기타 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느 국가의 세법 및 관련 규정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며, 소급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관할지의 경우 조세당국의 관련 세법 해석 및 적용이 선진국에 비해 일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집중

하위펀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투자자산에 투자하거나 특정 업종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많은 투자자산이나 업종에 투자를 분산하는 다른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집중됨으로써 이러한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는 더 큰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중국 A 주식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현행 규정에 외국투자자는 중국에서 적격 외국 기관 투자자(“QFII”) 지위를 취득한 기관을 통해서 중국 A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행 QFII 규정은 중국 A 주식 투자에 대해 엄격한 제한(투자제한, 최소 투자보유기간 및 원금과 소득의 해외 송금에 대한 규제를 포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하위펀드는 제한된 투자기회로 인한 손실을 입거나 혹은 QFII 투자제한, 중국 A 주식 시장의 비유동성 및/또는 거래체결 또는 결제의 지연이나 장애로 인해 투자목적이나 투자전략을 충분히 실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하위펀드의 중국 A 주식 및 기타 허용된 인민폐 표시 증권에 대한 투자는 인민폐에 대한 자격을 취득한 QFII 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하위펀드는 해당 하위펀드의 기준통화와 인민폐 간의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소형주 투자

또한 투자가 중소형 회사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현금흐름 관리를 위한 대안적 방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 및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하위펀드의 경우 특히 대규모 거래는 중소형주 시장이 가지는 상대적인 비유동성으로 인하여 대형 펀드의 이와 유사한 거래나 이와 유사한 대형주 거래와 비교하여 펀드의 운용비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펀드의 자산은 매각이 용이한 실현가능 자산으로 주로 구성됩니다. 펀드의 주요 채무는 투자자의 환매요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채무에 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자산(현금 포함)을 운용합니다. 환매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할 경우 보유자산의 매각이 필요할 수 있으며, 처분 규모가 크지 않거나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투자자산의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매각가격이 펀드의 순자산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외환위험

하위펀드의 총수익과 재무건전성은 하위펀드의 자산과 수익(income)이 하위펀드 기준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부터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통화 변동이 하위펀드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환위험의 주요 3 가지 요소는 환율변동이 투자자산 가치, 단기 기간간 차이 (timing differences)나 수입 수익(income)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하위펀드는 현물환이나 선물환 계약을 활용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헤지를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된 위험은 이하 금융파생상품 항목에서 설명됩니다.

가격결정 및 평가위험

펀드 자산은 주로 거래소나 이와 유사한 입증가능한 출처로부터 평가가격을 입수할 수 있는 상장된 투자자산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펀드는 또한 가격책정 오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 및/또는 비유동성 투자자산에도 투자합니다. 또한 펀드는 일부 시장이 휴일이나 기타 사유로 폐장할 때 순자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에 시가의 객관적이고 입증가능한 출처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시가를 결정하는 공정가치(Fair Value) 절차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공정가치(Fair Value) 절차에는 추정들과 주관성이 관여됩니다.

신용위험

자금 예탁기관이 도산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채무불이행)에 처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산은 이로부터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이나 기타 채무증권 투자 원리금의 최종 변제가 불확실한 경우 신용위험이 존재합니다. 위 양자의 경우 채무증서의 전체 예탁금이나 매매대금은 만일 채무불이행 발생 이후에 회복되지 않는 경우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디폴트) 위험은 일반적으로 “투자 이하” 등급으로 분류되는 채권들과 채무증서들에서 가장 큼니다. 이하 금융파생상품 항목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하위펀드가 보장(protection)을 매도한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은 실제 기초 채권, 채무증권나 증서들의 바스켓으로부터 연유하는 위험과 매우 유사한 신용위험이 수반됩니다.

거래상대방 신용 및 결제 위험

모든 증권투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인정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으로 승인한 브로커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승인된 브로커 목록은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만일 거래상대방이 지급 기일에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적시에 변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등 거래상대방이 하위펀드에 대한 금융채무 또는 기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하위펀드가 입는 손실은 최초 계약 가격과 대체 계약 가격간의 차액이 되며, 혹은 대체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화된 계약의 절대가치가 됩니다. 또한 ‘동시결제(Delivery versus Payment)’가 가능하지 않은 일부 시장의 경우 하위펀드가 결제 의무를 충족하지만 거래상대방이 그 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파산하는 경우 계약의 절대가치 만큼의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이머징시장 (러시아 포함)

몇 개의 펀드는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신흥시장의 증권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증권은 선진국 시장의 증권보다 더 변동적이며 따라서 성숙한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와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리스크가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 양도 및 통화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몇몇 신흥시장국가의 경제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전세계 실물가격 및/또는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에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당국의 경제적 여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각각의 펀드가 이러한 리스크를 이해하고 관리하지만 결국은 펀드의 주주들이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펀드는 순자산의 일부를 러시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행 룩셈부르크 규정상 펀드는 정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증권에 순자산의 최고 1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증권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투자한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투자에는 특수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러시아 시장의 경우 등 록기관이 항상 효율적인 정부 감독이나 기타 감독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의 등재에 따르는 위험뿐 아니라 증권 결제와 보관에 따르는 특수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러시아 증권은 보관회사로 행하는 Brown Brothers Hariman (Luxembourg) S.C.A. (“보관회사”) 또는 보관회사의 러시아 현지 대리인에게 위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관회사나 이의 러시아 현지 대리인은 인정된 해외기준에 따라 실물의 위탁이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보관회사는 오로지 자신의 과실과 고의 및 보관회사의 러시아 현지 대리인의 과실과 고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등록기관의 청산, 파산, 과실 및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펀드는 증권의 발행인 및/또는 발행인이 선임한 등록기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러시아 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전부나 일부는 다른 이머징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동화/구조화 채무증서

하위펀드는 유동화 채무증서나 구조화 채무증서(집합적으로 “구조화상품”이라 함)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서에는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및 담보부 채무증서 및 담보부대출채무가 포함됩니다. 구조화 상품은 합성 방식 등을 통해 기초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제공하며 이러한 상품의 위험/수익 특성은 해당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부 상품은 복수의 증서들과 현금흐름 프로파일과 관련되어 있어 모든 시장 시나리오들로부터의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의 가격은 구조화증서들의 기초 요소들의 변동에 따르거나 또는 이에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고객들로부터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가지는 회사나 구조화기구로부터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기업대출금, 조립식주택대출금(manufactured housing loan)이나 어느 형태의 매출채권(receivables)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구조화상품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다 증권의 가격이 더 큰 변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화상품에 대한 투자는 다른 증권보다도 유동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 부족은 자산의 현재 시가가 기초자산의 가치와 분리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구조화상품에 투자하는 하위펀드들이 유동성 위험에 보다 취약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상품의 유동성이 정규 채권이나 채무증서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이는 포지션 해소 능력이나 매도 가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투자

하위펀드들은 어느 차주(“차주”)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대주(들)”)이 가지고 있는 확정금리부/변동금리부 대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미상환 대출금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i) 양도이전, (ii) 참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대출시장과 연관된 위험은 고수익 채권 시장에 따르는 위험과 유사합니다.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차주가 대출채권의 보유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때 발생합니다. 유동성 위험은 수요 부족으로 인해 투자자산이 매각될 수 없거나 할인된 가격으로만 매각될 수 있을 때 발생합니다. 대출채권의 매각이 용이한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조차 유통시장의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해당 투자방침에 기재된 바에 따라 하위펀드들은 2002년 법에서 정한 단기금융상품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출양도든 대출참가든 이러한 대출채권은 투자자들 간에 자유롭게 거래되고 양도될 수 있어야 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룩셈부르크(“2010년 법”)이 2002년 12월 20일 룩셈부르크법(“2002년 법”)을 대체합니다. 다만, 2010년 법은 2011년 7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대출참가는 통상 대출참가의 양도자의 자격으로 행위하는 대주와의 계약관계만을 펀드에 발생시킵니다 (차주와의 관계는 발생하지 아니함). 해당 하위펀드는 해당 하위펀드와 집합투자업자가 신용도가 있다고 판단한 차주 사이에 대주가 중개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참가권을 취득합니다. 대출참가를 매입할 때 해당 하위펀드는 차주 기업의 경제적 위험 및 중개은행 혹은 기타 금융 중개기관의 신용위험도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양도에는 통상 대주로부터 제3자로서의 채권 이전이 수반됩니다. 대출양도를 매입할 때 하위펀드는 차주기업의 신용위험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출은 담보부 혹은 무담보부 형태일 수 있습니다. 예정된 원리금의 미지급 발생시 전액 담보된 대출은 무담보 대출에 비해 더 많은 보호책을 하위펀드에 제공합니다. 그러나, 담보부 대출에 제공된 담보물의 처분으로 차주 기업의 채무가 변제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직접 양도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출에 대한 투자에는 대출 만료시 하위펀드가 담보물의 부분 소유자가 됨으로써 담보물의 소유와 처분에 따르는 비용과 채무를 부담할 수 있게 되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대출참가는 통상 차주 기업에게 대한 대출에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 혹은 대주단이 제공합니다. 대출은 주로 모든 대주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대리은행이 관리합니다. 대출조건 혹은 기타 채무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위펀드가 차주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소구권을 가지지 않는 한, 펀드는 차주 기업에 대한 적절한 대출 구제책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리은행 또는 여타 금융 중개기관에게 의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가 투자하고자 하는 대출참가 혹은 대출양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용등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당관련증권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은 고정 금리 주택저당증권의 만기를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권은 금리에 보다 민감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 시기에 주택저당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는 추가적인 변동성(만기연장 위험)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변동금리부 혹은 확정 금리부 (adjustable or fixed rate) 주택저당

증권에는 조기상환 위험이 수반됩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차입자는 주택저당채권을 예상 보다 빨리 상환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조기상환이 이루어지면 펀드가 더 낮은 시장 금리로 자금을 재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펀드의 수익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유동화 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은 여타 증권의 경우 보다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 부족은 자산의 현 시가와 기초자산의 가치 간의 괴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동화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는 유동성 위험에 보다 더 민감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유동화상품의 유동성이 정규 채권이나 채무증서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이는 포지션 해소 능력이나 매도 가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식연계채권(구조화채권)

주식연계채권(ELN) 및 유사한 구조화채권은 그 가치가 채권에 명시된 기초증권과 연동하여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채권을 구조화하는 거래상대방과 관련이 됩니다. 금융파생상품과 다르게 채권의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의 매도인에게 현금이 지급됩니다. 하위펀드는 거래상대방(채권의 구조설계자)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채권의 기초 증권 가치와 상관없이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합니다. 또한, 이러한 채권 programmes 계약은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상당한 정도로 변형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추가적인 위험이 됩니다. ELN 이나 유사한 채권의 유동성이 기초증권, 정규 채권 이나 채무증서의 유동성보다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는 포지션 해소 능력이나 매도 가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 대여

증권대여는 (a) 하위펀드로부터 증권을 대출한 차주가 이의 반환을 불이행할 경우, 잘못된 가격평가, 불리한 시장변화, 담보발행인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거래시장에서의 담보물의 비유동성 등으로 인하여 대여 증권의 가치 보다 실현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 및 (b) 대여 증권의 반환이 지연됨으로써 증권 매도 거래에 따른 하위펀드의 증권 교부 의무 이행 능력이 제한될 수 있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환매조건부매매거래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는 하위펀드가 현금을 예약한 거래상대방의 불이행 발생시, 담보물에 대한 잘못된 가격평가, 불리한 시장변화, 담보발행인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거래시장에서의 담보물의 비유동성 등으로 인하여 예약된 현금의 가치 보다 수령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 (b) (i) 지나치게 많은 현금이 오랜 기간 동안 묶이게 되는 현상, (ii) 예약 현금의 회수 지연 또는 (iii) 담보물 실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환매요청에 응하고, 증권을 매입하거나, 전반적으로 재투자자를 이행하는 피델리티펀드의 능력이 제한될 수 있는 위험, 및 (c) 환매조건부매매거래는 경우에 따라 선택적 파생금융상품이나 선도파생금융상품(optional or forward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에 수반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하위펀드에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금융파생상품

펀드는 하위펀드 투자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리스크나 비용을 줄이고 추가 자본이나 수익(income)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하위펀드들은 투자목적에 보다 상세히 기재된 바와 같이 광범위하게 그리고/또는 보다 복잡한 전략을 위하여 파생상품을 활용(즉, 파생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과 파생상품을 언급하는 기타 부분에서 사적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나 장외거래 파생상품을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합니다.

투자자들은 파생상품 활용에 대한 권한을 유념하여 특정 펀드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외부 투자자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생상품은 집합투자업자와 같이 숙련된 투자자문회사가 신중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파생상품에는 전통적인 투자방법에 따르는 위험과 상이하거나 일부 경우에는 그 보다 큰 위험이 수반됩니다. 파생상품의 활용에는 레버리지 거래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거래를 활용하지 않을 때 보다 이러한 하위펀드들의 순자산가치는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레버리지 거래가 각 펀드의 포트폴리오 증권 및 기타 증서의 가치의 증감을 더욱 크게 만드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은 투자자들이 펀드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파생상품 사용에 따르는 중요한 위험요소 및 관련 문제를 개괄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 시장 위험 - 특정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는 모든 투자자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험을 말합니다.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가치(증권이나 기준 벤치마크)가 변동하는 경우 투자상품의 가치는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옵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가치 변동의 절대적인 규모는 기초증권이나 기준 벤치마크 가치 변동과 매우 유사합니다. 옵션의 경우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는 바와 같이 옵션가치의 변동은 기타 다양한 변수에 달려있으므로 옵션 가치의 절대적인 변동이 기초 가치 변동과 반

드시 유사하지는 않습니다.

- 유동성 위험 - 유동성 위험은 특정 상품의 매매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약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와 같이) 파생상품거래 규모가 매우 크고 관련 시장이 비유동적일 경우, 거래를 개시하거나 유리한 가격으로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거래상대방 위험 및 신용위험 - 파생상품 거래상대방(통상 “거래상대방”)이 파생상품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장내 파생상품에 따르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은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따르는 위험보다 낮는데, 이는 각 장내 파생상품의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인 결제기관이 결제이행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증은 전반적인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 결제기관이 운영하는 일별 지급시스템(즉, 증거금 요건)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브로커 및/또는 거래소에 증거금으로 예탁하는 자산은 거래상대방별로 별도 계정으로 보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이러한 거래상대방들의 채권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결제기관의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합투자업자는 내부신용평가와 외부 신용평가기관 등급을 활용하여 현재와 잠재적인 장래 신용익스포저를 고려하여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측정, 감시하고 관리하는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 제도를 채택합니다. 사적으로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들간의 약정이므로 관련 당사자들의 요건에 따라 맞춰집니다. 문서화 위험은 표준 ISDA 문서를 채택함으로써 감소됩니다. 하위펀드의 개별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는 관련 하위펀드 순자산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은 담보약정의 활용을 통하여 추가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단 담보약정에는 여전히 발행인들이나 담보물 예탁기관의 도산위험과 신용위험이 수반됩니다. 나아가 그 한도 아래로는 담보가 요구되지 않는 담보 한계금액이 존재하며 담보 요구 결정 시기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담보 수령 시기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모든 현재 익스포저가 담보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결제 위험 - 선물, 선도, 차액옵션 스왑계약(어떠한 유형인지 여부를 불문)이 적시에 결제되지 않아 결제 이전에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증가하여 잠재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결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하위펀드가 입는 손실은 증권과 관련되는 이러한 다른 상황과 마찬가지로 최초 계약 가격과 대체 계약 가격간의 차액이 되며, 혹은 대체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화된 계약의 절대가치가 됩니다.
- 펀드 운용 위험 - 파생상품은 주식 및 채권 투자와는 상이한 투자기법 및 위험분석을 요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투자자산입니다.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가능한 모든 시장상황 하에서 파생상품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점 없이 기초자산의 특성뿐 아니라 파생상품 자체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가격은 일부 시장 상황에서는 기초 증서의 가격과 연동하여 변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위험 - 파생상품 사용에 따르는 기타 위험에는 파생상품의 가격결정요류 및 부적절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일부 파생상품, 특히 사적으로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에서 관측가능한 가격이 없으므로 기초 증권 가격이나 기준 벤치마크를 다른 시가 출처로부터 입수한 공식을 활용합니다. 장외옵션은 전제조건을 가진 모델 활용과 관련되어 있어 평가 오류 위험이 커집니다. 부적절한 평가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현금지급요건의 증가 또는 펀드의 가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동 상품이 따르고자 하는 자산, 금리 및 지수의 가치와 항상 완벽한 상관관계를 가지거나 혹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항상 이를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펀드의 파생상품 사용이 항상 펀드의 투자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특정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

해당 하위펀드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금융파생상품은 위 ‘3. 투자전략’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모든 파생상품을 열거한 것은 아님). 이하의 파생상품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하는 하위펀드의 경우 아래와 같은 위험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증권선도계약 및 차액계약: 이러한 계약의 매입인 또는 매도인은 기초증권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합니다. 기초증권의 가치가 변화하면, 계약가치가 정부(正負)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결제기관을 통해 결제되는) 선물계약과 달리 장외선도계약과 차액계약은 당사자 양자간에 사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는 선물계약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각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며, 이러한 위험 경감을 위해 담보약정이 이루어집니다. 나아가, 이러한 계약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서 거의 모든 자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로부터 매입인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시가평가에 따른 증거금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주가지수, 단일 주식, 금리 및 채권 선물: 장내 선물 계약의 매입인 또는 매도인은 기초 기준지수/증권/계약/채권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합니다. 선물계약은 미래의 특정 일자까지 경제적 가치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선도 계약에 해당합니다. 가치의 교환은 계약에서 정한 일자까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계약은 현금 결제 조건이며, 실패 교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초증권(underlying instrument)의 교환은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물은 표준화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공식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고, 결제기관의 보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선도계약과 구별됩니다. 또한, 지급 보장을 위해 선물의 경우에는 매일 결제되어야 하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연동한 최초 증거금 및 증거금 요건이 적용됩니다.

장내외옵션: 옵션은 (옵션의 거래시점 및 거래 이후 시점의 현물가격 대비) 특히 기초자산의 행사가격, 옵션의 잔여 만기, 옵션 유형 (유럽식, 미국식 등) 및 변동성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복잡한 상품입니다. 옵션거래에 따르는 가장 큰 위험은 (옵션이 내재가치(즉, “내가격”)를 가지고 있거나, 행사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에 근접(“등가격”)할 경우에 발생하는) 기초자산의 시장위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은 옵션 가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다른 변수들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은 행사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에서 멀어질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결제기관을 통해 결제되는) 장내옵션거래와 달리, 장외옵션계약은 당사자 양자 간의 사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는 각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며, 이러한 위험 경감을 위해 담보약정이 이루어집니다. 장외옵션의 경우 장내옵션 보다 유동성이 더 적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옵션 포지션의 청산 능력 및 청산가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통상적으로 지급기간당 확정금리에 따른 지급의무를 변동금리 벤치마크에 따른 지급의무와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리스왑의 대상이 되는 계약원금은 교환되지 아니하며, 확정/변동금리만 교환됩니다. 두 개의 금리 지급일이 일치할 경우 통상 결제는 정산하여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거래에 따르는 시장위험은 확정금리 및 변동금리 레그(the fixed and floating legs)를 위해 활용되는 기준 벤치마크의 변화에 의해 결정됩니다. 금리스왑은 당사자 양자 간의 장외 계약이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의 요구에 맞춰 계약내용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며, 이러한 위험 경감을 위해 담보약정이 이루어집니다.

외환계약: 외환계약은 특정 일자 현재 어느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이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가치는 환율변동(선물환의 경우 금리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이 하위펀드의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를 기준통화로 헤지할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헤지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 및 가치 변동이 헤지대상 통화 가치의 변동과 정확하게 상쇄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어느 특정일자 현재 기준으로 총계약금액을 교환하기 때문에 펀드의 지급일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 수령일까지 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펀드는 대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노출되며 거래원금 전체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디폴트스왑(CDS): 이 계약은 기초증권 또는 증권바스켓의 인정된 신용도에 따라 시가가 변동하는 신용파생상품을 말합니다. 보장(protection)의 매도시, 펀드는 기초증권 또는 증권바스켓을 실제 매입한 것과 유사한 기초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합니다. 보장(protection)의 매입시, 기초증권(또는 증권바스켓 중 어느 한 증권)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펀드는 스왑계약 원금과 채무불이행 발생 시점 현재 시장에서 결정된 기대회수까지 간의 차액에 기초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액을 수령합니다. 스왑계약은 당사자 양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위험 경감을 위해 담보약정이 이루어집니다. CDS의 계약위험은 ISDA 표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감될 수 있습니다. CDS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기초 증권(들) 보다 유동성이 더 낮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CDS 포지션의 청산 능력 및 청산가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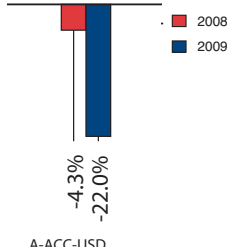
총수익교환스왑(TRS): 이 계약은 시장 및 신용 디폴트 파생상품을 결합한 것으로서 신용사유와 신용전망뿐 아니라 금리 변동에 의해서도 변동합니다. 펀드가 총수익을 수령하는 형태의 TRS의 경우에는 위험특성 면에서 기초 기준 증권을 실제로 소유하는 것과 유사한 위험이 수반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거래는 표준화된 기초 기준 벤치마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리스왑 보다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TRS 포지션의 청산 능력 및 청산 가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왑계약은 당사자 양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위험 경감을 위해 담보약정이 이루어집니다. TRS의 계약위험은 ISDA 표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지수스왑(inflation index swap): 이러한 종류의 거래에 수반되는 시장위험은 해당 거래를 위해 활용되는 2개 레그(이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벤치마크임)에 사용되는 기준 벤치마크의 변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플레이션지수스왑은 (통상) 당사자 양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의 요구에 맞춰 계약내용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며 이러한 위험 경감을 위해 담보약정이 이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지수스왑은 통상적으로 확정된 지급의무를 변동 지급의무와 교환하는 거래를 수반합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스왑거래의 변동 부분은 특정 주요 통화의 인플레이션 지수와 연동됨).

펀드 및 클래스의 해지: 하위펀드나 주식 클래스가 해지되는 경우, 해당 하위펀드나 클래스의 자산은 실현되고, 채무는 이행되며, 순실현대금은 당해 하위펀드나 클래스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주주들에게 분배됩니다. 이러한 자산 실현이나 배분시 해당 하위펀드나 주식클래스의 일부 투자자산의 가치가 최초 투자원금을 하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운영비용은 해당 하위펀드나 주식클래스가 부담합니다. 펀드, 하위펀드 또는 클래스에 대하여 상각처리되지 아니한 설립비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술한 위험요소는 펀드 투자에 따르는 모든 위험을 설명한 것은 아니며, 투자자들은 펀드에 대한 투자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증권신고서 전문을 읽고, 자신의 법률, 조세, 금융 자문인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6. 펀드성과

2006-2009 연총수익 (4 월 30 일 종료 회계연도)		2009.4.30 자 연평균수익			
 A-ACC-USD		Share Class	Past 3 yrs	Past 5 yrs	Past 10 yrs
		A-ACC-USD	-	-	-
수익률은 총투자수익(선취판매수수료 제외)의 채투자자를 가정하여 순자산가치에 기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과거 수익률이 반드시 펀드나 집합투자업자의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7. 기타 주요 정보

집합투자업자:	FIL Fund Management Limited
총괄판매대행회사:	FIL Distributors
일반사무대리인:	FIL (Luxembourg) S.A., Luxembourg (등록 및 명의개서대리인, 일반사무대리인 겸 주소지대리인)
감독당국: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CSSF), Luxembourg
보관회사:	Brown Brothers Harriman (Luxembourg) S.C.A.
외부감사인:	PricewaterhouseCoopers S.à.r.l., Luxembourg
설립일:	2006.1.23
재판외 민원 및 구제방법:	준법감시인, FIL (Luxembourg) S.A, 2a, Rue Albert Borschette, BP 2174, L-1021 Luxembourg. 피 델리티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상계획(compensation scheme)은 없습니다.

8.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 인력/팀 이름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기준일자: 2010. 12. 31)		주요 경력 및 이력
			펀드 수	규모 (단위: 백만달러)	
Bryan Collins	1978	채권(Fixed Income)/ 포 트폴리오 매 니저	5	1053.17	경력: 2009 - 현재 포트폴리오 매니저- 채권 Fidelity Investments, 홍콩 2006 - 2009 Trader - 채권 Fidelity Investments, 홍콩 2003 - 2006 Senior Trader - 채권 & FX,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Australia) Limited, 시드니 2002 - 2003 애널리스트/Junior Trader - 채권 CSAMAL, 시드니 2000 - 2002 Client Consultant - 채권 CSAMAL, 시드니 학력 및 자격:

책임운용전문 인력/팀 이름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기준일자: 2010. 12. 31)		주요 경력 및 이력
			펀드 수	규모 (단위: 백만달러)	
					- Commerce, 석사,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시드니 - 문학 학사,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시드니 - CFA –Level 3 합격

9.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순자산가치의 산정

각 하위펀드 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정관에 따라 개별 하위펀드의 기준통화로 결정됩니다. 각 클래스의 순자산가치는 각 클래스의 주요거래통화로 결정됩니다.

각 하위펀드 및 필요한 경우 각 하위펀드 클래스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먼저 각 주식 클래스에 귀속되는 해당 펀드의 순자산액을 결정하고 클래스 B 주식 및 클래스 E 주식(국내에서는 등록 판매되지 아니함)이 지급하여야 하는 계속적인 판매보수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동 금액은 가능한 한 영업 종료시 기발행된 해당 클래스의 주식수로 나누어 집니다.

주 1)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날(예 : 공휴일)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2) 국내의 경우 각 하위펀드 주식의 순자산가치는 국내판매대행회사의 영업장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순자산가치 결정의 일시적인 중지와 주식의 발행, 전환, 환매의 일시적인 중지

이사들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 기간동안 모든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의 결정, 주식의 발행, 전환 및 환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피델리티펀드의 각 하위펀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투자의 중요한 부분이 호가되는 거래소 또는 시장 또는 투자자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나 거래소가 폐장인 경우 (일상적인 휴일이나 통상의 주말은 제외). 단, 당해 거래소나 시장의 폐장이 동 거래소나 시장에서 호가되는 투자자산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함. 또는 당해 시장이나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제한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단, 당해 제한이나 중지가 피델리티펀드의 각 하위펀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당해 시장이나 거래소에서 호가되는 투자자산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함.
- 피델리티펀드의 각 하위펀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해당 하위펀드 자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투자자산을 피델리티펀드가 실제로 처분할 수 없게 되거나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는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 피델리티펀드의 각 하위펀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투자자산의 가격 또는 어느 시장 또는 거래소에서의 현재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신수단의 장애 발생의 경우
- 어떠한 이유로 각 하위펀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피델리티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의 가격이 즉각적으로 또는 정확하게 확인될 수 없는 경우
- 각 하위펀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피델리티펀드의 투자자산의 실현이나 지급을 수반하거나 수반하게 될 수 있는 자금의 송금이 이사들의 의견으로 정상적인 환율로 실행될 수 없는 경우
- 피델리티펀드의 해산을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통지가 공고된 경우 그러한 공고일부터

나아가 어느 가치산정일에 환매요구 또는 전환요구가 어느 하위펀드에 대하여 발행주식의 5%이상과 관련된 경우 이사들은 당해 주식의 일부분 또는 전부에 대한 환매 또는 전환을 이사들이 피델리티펀드의 최선의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기간동안 안분하여 유예할 수 있으며 이사들은 어느 하위펀드 또는 클래스 기발행 주식의 3%와 미화 5 백만달러 (또는 이의 상당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환매요청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은 통상적으로 20 평가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동 기간 동안 환매 또는 전환요구는 그 이후의 요구에 우선하여 충족될 것입니다.

1 개 하위펀드의 주식 순자산가치의 결정의 중지는 관련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하위펀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식의 전환 또는 환매를 요구하거나 주식청약신청을 한 주주들은 주식의 청약권, 전환권 또는 환매청구권이 중지되는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으며, 그러한 중지의 종료 사실도 즉시 통지받습니다. 청구권의 중지는 피델리티펀드의 의견으로 중지기간이 1 주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가 결정한 방식으로 공고됩니다.

펀드의 해산시, 피델리티펀드의 해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의 1 차 소집 통지의 공고 후에는 어떠한 주식도 발행, 전환 또는 환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공고시의 기발행된 모든 주식은 피델리티펀드의 청산 분배에 참여합니다.

각 판매대행회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하위펀드의 주식 판매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신청의 승인을 거부할 권리도 가집니다. 통상적으로 주식의 판매는 피델리티펀드가 순자산가치의 결정을 중지할 때 그에 따라 중지됩니다.

일부 하위펀드의 매입, 청약 및 전환의 제한

이사회는 어느 하위펀드 또는 주식클래스에 대한 신규 투자자만으로부터의 모든 매입, 청약 또는 전환매입을 일부 중단하거나 혹은 어느 하위펀드 또는 주식클래스에 대한 모든 매입, 청약 또는 전환매입을 전부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한 일부 혹은 전부 제한의 경우에도 환매 또는 전환매도는 가능함).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웹사이트(<http://www.fidelity-international.com>)*를 갱신하여 해당 하위펀드 또는 주식클래스의 변경 상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기존 주주 및 장래 투자자는 하위펀드 또는 주식클래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델리티펀드 또는 판매대행회사에게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입 제한 조치가 내려진 하위펀드나 주식클래스의 경우 이사회는 견해로 이러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매입은 재개되지 않습니다.

*국내투자자들은 해당 판매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정관은 순자산가치 결정을 위하여 다음을 규정하고 있는 평가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은 평가가 실행된 때의 시점에서 입수가능한 최종 가격에 평가되거나 혹은 이사 또는 그들의 대리인의 의견에 따라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평가됩니다.
2.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증권으로서 기타 다른 정규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전항에서 기술된 방법을 준용하여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다른 평가방식, 예컨대, 현금형 펀드와 관련하여서는 단기채권 양도성 증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인 할부상각법(linear amortization) 등이 공정가치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3. 피델리티펀드가 소유하는 거래가 제한된 증권은 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결정하는 대로 그 주식의 공정가격으로 평가됩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고려되는 요인들은 (ㄱ) 증권의 처분에 대한 금지의 성격과 존속기간, (ㄴ) 동종의 주식 또는 금지된 주식의 전환가능한 주식을 위한 시장이 존재하는 범위, (ㄷ) 동종의 거래가 제한되지 않은 주식의 시장가격이나 전환가능한 주식이 시장가격에 취득된 경우 시장가격의 초기할인금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전문딜러와 기관투자자 사이에 만들어진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투자, 주식 또는 기타 자산등의 가격은 입수가능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5. 기타 모든 자산은 이어나 그들의 대리인이 정하는 개별 추정 매도가격으로 평가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하여 전술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공정가치로 보유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는 다른 적절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펀드의 보유자산을 평가할 수 있도록 수권됩니다.

예를 들어 펀드의 평가시점 현재 장마감된 시장에서 입수가능한 최종 가격은 펀드 보유자산의 공정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장마감된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서 펀드의 평가시점 현재 개장중인 타 시장에서 (펀드가 투자한 시장의 장마감 시간 이후에) 가격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마감된 시장에서 거래된 보유자산의 공정가치를 고려함에 있어서 또 다른 요인들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를 공정가치에 맞게 조정하지 못할 경우 장기 주주들의 비용 부담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이러한 가격을 마켓타이밍으로 알려진 거래에 활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들 또는 이의 대리인은 해당 시장에서 마감시간과 펀드의 평가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시장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종 시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펀드의 보관회사와 감사인들에게 알려진 바와 같은 합의된 방침과 일련의 절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모든 조정은 모든 하위펀드와 주식클래스에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자산보유가 중지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중단되거나, 혹은 최근 시가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조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에 따른 지급금은 지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 지급일까지 어느 하위펀드에 지급된 금액이 순자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펀드의 기준통화나 클래스의 주요거래통화로 표시되지 아니한 모든 자산과 부채의 가치는 주요은행이 최근에 고시한 환율로 해당 펀드의 기준통화나 해당 클래스의 주요거래통화로 전환됩니다. 그러한 고시가 이용될 수 없는 경우 환율은 선의로 또는 이사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위펀드와 관련된 자산은 그 하위펀드에 속하는 자산에서 펀드에 속하는 채무를 감한 자산을 의미하는데, 피델리티펀드의 자산이나 채무가 그 하위펀드에 속한다고 간주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자산 또는 채무는 모든 피델리티펀드나 모든 관련 하위펀드에 연관되는 자산 또는 채무에 그 순자산가치의 비율에 따라 할당됩니다. 부채는 해당 하위펀드를 구속합니다. 단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사들은 관련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 하위펀드에 구속력이 있는 연대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의 계산은 이사들 또는 그들에 의해 선임된 기관(“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통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릅니다. 악의, 부주의 또는 명백한 실수가 없으면, 이사들이나 그 대리인에 의한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확정적인 것으로서 피델리티펀드와 현재, 과거, 미래의 주주를 구속합니다.

가격조정정책 (Swing Pricing)

어느 펀드에서 대량 매입/환매 거래가 발생할 경우,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현금 유입/유출에 필요한 증권거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등이 당해 펀드의 기준가격에 완전히 반영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펀드 자산의 ‘희석화(dilution)’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주주를 보호하고자, 대량거래로 판단되는 거래 발생에 따르는 거래비용 등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가격조정정책이 2007 년 11 월 1 일부터 일상적인 자산평가 과정의 일부로서 채택되었습니다.

어느 거래에 발생한 특정 펀드 주식의 순거래량이 이사들이 당해 펀드에 대하여 수시로 설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각 펀드 수준에서 발생한 순일일거래량을 처리하기 위해 투자자산을 처분하거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반영하여 자산가치를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시장상황, 예상 희석화비용 및 펀드의 규모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이사들이 결정하며, 이러한 정책은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순거래량으로 인해 발생주식수가 증가한 경우, 가격은 상향조정되게 되며, 순거래량으로 인해 발생주식수가 감소한 경우, 가격은 하향조정되게 됩니다. 조정된 자산가치는 당일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공동 운용되는 일부 펀드의 경우에는 그러한 관련 펀드의 자산의 집합을 ‘풀(pool)’이라 합니다. 개별 펀드의 자산은 하나 이상의 풀을 통해 투자됩니다. 이러한 풀에 가격조정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이사회는 각 풀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조정은 조정 전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2%를 넘지 않습니다. 가격조정정책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대량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시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조정이 장래 어느 시점에 발생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가격조정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 것인지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 하위펀드 및 주식클래스의 해지에 관한 사항

하위펀드 또는 주식클래스는 가) 해당 하위펀드 또는 해당 클래스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또는 나) 어느 하위펀드나 클래스의 순자산가치가 미화 50,000,000 달러 혹은 그 상당액 이하로 떨어졌다고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로서 결정하는 경우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해당 펀드나 클래스의 자산은 실현되고, 채무는 이행되며, 순실현대금은 당해 하위펀드나 클래스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주주들에게 분배됩니다. 주주들에 대한 해지금의 지급은 필요한 경우 당해 하위펀드나 클래스 주식의 주권을 피델리티펀드에 전달할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이사들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다른 증거의 이행을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하위펀드나 주식클래스가 해지되는 경우, 해지 통지는 등록된 주주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위펀드의 해지시 그 통지는 룩셈부르크의 메모리얼(Mémorial)과 룩셈부르크 보르트("d'Wort") 그리고 이사들이 정하는 피델리티펀드의 등록지에서 발행하는 다른 신문에 공고됩니다.

하나 또는 여러개 하위펀드들의 주주는 해당 하위펀드(들)의 클래스 회의의 결의로써 해당 펀드(들)의 자산을 다른 하위펀드에 배정할 것과 해당 하위펀드(들)의 주식을 다른 하위펀드의 주식으로 재지정할 것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주식의 분할이나 병합을 거쳐 단주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이를 승인하는 결의가 있을 경우 피델리티펀드의 정관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단주권에 대한 권리를 주주에게 배정한 후).

하나 또는 여러 개 하위펀드들의 주주는 해당 하위펀드(들)의 클래스 회의의 결의로써 해당 하위펀드(들)에 기하는 자산과 부채를 해당 주식 클래스(들)의 소유자들에게 분배할 집합투자기구의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기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 또는 여러 개 하위펀드들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델리티펀드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신규 하위펀드와 관련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통지를 공시합니다. 동 공시는 주식 소유자들이 합병이 실행되기 전에 무상으로 보유 주식의 환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병이 효력을 갖기 전 1 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델리티펀드내의 여러 클래스 간의 병합을 결의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주주총회는 정족수를 요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결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어느 하위펀드(들)에 기하는 자산과 부채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것에 대한 클래스 회의의 결의는 정관에 기재된 정족수 및 과반수 요건에 따라 채택됩니다. 그러나 합병이 뮤추얼투자펀드(fonds commun de placement) 또는 외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와 이루어진 경우 결의는 그러한 합병안에 대하여 찬성 투표를 한 주주만을 구속합니다.

피델리티펀드는 무제한의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주주가 결의하는 때는 언제든지 청산 가능합니다. 각 하위펀드에 속하는 청산대금은 청산인에 의해 해당 하위펀드의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주주들이 즉시 청구하지 않는 금액은 Caisse des Consignations 의 에스크로계좌에 보관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청구되지 않은 금액은 룩셈부르크법 규정에 따라 그 권리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피델리티펀드의 순자산가치가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자본의 3분의 2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동 펀드의 청산을 고려하기 위해 소집됩니다. 룩셈부르크법이 규정하는 최소 자본은 현재 Euro 1,250,000 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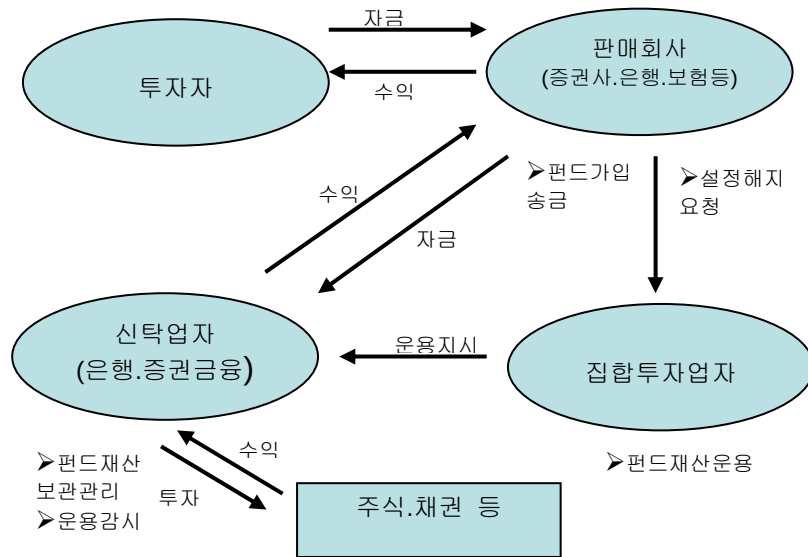
11. 이익배분에 관한 사항

하위펀드는 수익(income)을 누적하거나 순경상이익(net current income)으로부터 정기적인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자본금(capital)으로부터 비정기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클래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클래스의 경우, 해당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자본증가분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본금에서의 배당금 지급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주당 지급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당 배당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당시 경제상황에 따라 혹은 자본금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장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펀드가 안정적인 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하위펀드는 특정 주식 클래스에 대한 안정적인 주당 배당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목적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모든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지급되는 배당금에는 해당 주식클래스에 속하는 자본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의 순이익(net income)이 배당금으로 선언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러한 초과금은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해당 주식의 순투자이익과 순자본이익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배당금 금액이 반드시 해당

하위펀드의 총수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하위펀드의 총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순자산가치 추이(배당 전 기준)와 배당 분배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우편번호 100-101 대한민국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빌딩 4층, 전화번호: 3783-0901 인터넷홈페이지: www.fidelity.co.kr
회 사 연 혁	2002년 8월 설립되었으며(설립당시 상호는 "피델리티 투자자문 코리아 주식회사"임), 2003년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2004년 12월 8일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12월 10일에 자산운용업인가를 받아 그 상호를 "피델리티 투자자문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2월 4일자로 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 및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12월말 현재 자본금은 150억 원이며 FIL Limited 및 FIL Asia Holdings Pte. Limited가 회사의 주식을 각각 약 41.18% 및 약 58.82%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한국의 일반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투자신탁상품, 자산운용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산운용에 대한 Fidelity International의 폭넓은 해외 경험을 충분히 이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나. 주요 업무

(1) 자산운용업무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가)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다)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2) 의무 및 책임

- (가)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나)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2010.3.31	2009.3.31	항목	2010.3.31	2009.3.31
I. 현금 및 예치금	26,133	33,500	I. 영업수익	33,238	38,499
II. 유가증권	504	504	II. 영업비용	25,847	31,872
III. 대출채권	431	-	III. 영업이익	7,391	6,627
IV. 유형자산	181	445	IV. 영업외수익	53	54
V. 기타자산	9,212	8,687	V. 영업외비용	20	50
자산총계	36,462	43,136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7,424	6,631
I. 예수부채	0	5	법인세비용	1,801	2,269
II. 차입부채	0	6,000	당기순이익	5,624	4,362
III. 기타부채	8,488	9,346			
부채총계	8,488	15,351			
I. 자본금	15,000	20,000			
II. 이익잉여금	12,974	7,785			
자본총계	27,974	27,785			
부채와 자본총계	36,462	43,136			

라. 운용자산 규모

(2011년 1월 31일 기준, 단위: 억좌)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채간접					
수탁고	27,534	23	576	3,379	-	-	-	-	31,51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1) 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외화통화 간의 환헤지 거래에 대한 운용 및 운용지시에 관한 업무를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라 합니다)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1981년 설립되어 자산운용업무의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FIL Limited의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조사, 투자 및 거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사실에도 불구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보수에서 지급됩니다.

(2)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개요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명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설립일	1981년 5월 12일
회사주소	Level 2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Admiralty, Hong Kong 전화번호: (852) 2629 2800 팩스번호: (852) 2845 9051

※ 업무위탁계약기간의 종료, 업무위탁계약의 해지 등 일정 사유 발생시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운용사를 변경하는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가. 신탁업자의 개요

상호: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우편번호 100-161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HSBC 빌딩 5층
전화: 2004-0000

[한국에서의 HSBC의 연혁]

1982	HSBC 부산지점 개설 (1920년대 대표사무소 폐쇄 후)
1984	HSBC 서울지점 개설
1986	Marine Midland Bank 서울지점 취득
1988	Midland Bank 서울지점 취득
1998	개인금융서비스 시작, 삼성지점 개설
1999	압구정 지점 개설
2000.1.	개인금융센터 개설
2000.8.	분당지점 개설
2000.12.	서초지점 개설
2001.2.	방배지점 개설
2002.2.	광장지점 개설
2005	인천, 대전, 대구지점 개설

나.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4)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5)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6) 증권 상환금의 수입
- (7) 여유자금 운용이자 수입
- (8)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다. 업무위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 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자산을 제외함)
-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행

라. 의무 및 책임

(1) 신탁업자의 의무

- (가)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2) 신탁업자의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개요

회사의 상호: HSBC 펀드서비스(주)

주소: 우편번호 150-73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빌딩 6층, 전화: 3771-9800

인터넷홈페이지: www.hsbc.co.kr

설립일: 2000년 3월 23일

등록일: 200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펀드 일반사무관리업무 등록: 2000년 8월 28일

HSBC 그룹으로 합류: 2003년 8월 1일

나.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로 HSBC 펀드서비스(주)를 선임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및 결정, 이 투자신탁의 활동과 관련한 장부, 기록 및 명세서의 보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장부 등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열람을 위해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사실에도 불구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에서 지급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일반사무관리를 아웃소싱한 경우 해당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 (2)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공시
- (3) 집합투자업자가 위임한 기타 업무

다.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계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한국채권평가는 채권시가평가제 도입으로 2000년 5월 29일 국내최초의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어 2000년 7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가격평가 전문회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주주는 한국기업평가(주), 이벨류(주), 국민은행, 산업은행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현재 자본금은 50억원입니다. 현 주소지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입니다.
전화번호: 02-399-3350, 인터넷홈페이지: www.koreabp.com

KIS채권평가는 2000년 6월 20일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가격평가 전문회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 주소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35-4 화보빌딩 4층입니다.
전화번호: 02-3215-1450, 인터넷홈페이지: www.bond.co.kr

나. 주요 업무

- (1) 채권 시가평가 정보 제공
- (2) 기업신용평가정보 서비스
- (3) 채권지수 서비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가) 수익자 총회의 소집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본 조에 따른 통지 이후에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후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④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3년간 계속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⑥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합니다.
- ⑦ 위 가.(1) 단서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위 ②, ③, 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나)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는 특정 일자 현재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가.(1)단서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위 정족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①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요구하는 양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세한 정보는 수익자에게 발행된 통지서에 포함됩니다.
-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가)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의결권

의결권은 수익증권 1 좌마다 1 개로 합니다. 수익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위임장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3 개의 자투자신탁과 1 개의 모두자신탁으로 구성된 경우를 가정하여 비례적 의결권 행사를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자투자신탁 의결내용	모투자신탁 보유좌수	모투자신탁 의결내용
자투자신탁 A 1,000 좌	찬성 500/반대 500	200 좌	찬성 100/반대 100
자투자신탁 B 1,000 좌	찬성 600/반대 400	100 좌	찬성 60/반대 40
자투자신탁 C 1,000 좌	찬성 800/반대 200	1,000 좌	찬성 800/반대 200

(마)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 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 (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가.(1) 단서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바) 수익자명부 관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 법령·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위탁계약서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함),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및 신탁업자의 변경, 그리고 신탁계약기간의 변경과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과 관련한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및 경비를 공제한 후의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통지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본을 제공합니다.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 명세서,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와 관련하여 열람이나 그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정보는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법 제91조 및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제한 하에서 제공되거나 거절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에게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사유는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함이라는 것이 집합투자업자의 견해입니다.

- (1) 이 정보의 공개 또는 제3자의 사용은 이 투자신탁의 다른 수익자들에게 손해를 끼쳐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다른 사람들이 집합투자업자 고유의 투자방법 및 기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정보를 엄중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 (3) 이 투자신탁의 데이터를 시차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것은 수익자들의 단기 투자전망에 영향을 미치며, 투기업자 및 기타 전문 트레이더들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악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 (4)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하는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수익자들의 이해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활동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감독을 하게 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가)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나)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이 증권신고서 (등록신청서 및 투자설명서)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 및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의 투자신탁의 원본액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010년 12월말 현재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가)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

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자산운용보고서는 모두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가)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합니다)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

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①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③ 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나)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②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를 거치는 경우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에서 발행되는 헤럴드 경제 및 서울경제신문에 공고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여하한 사항의 발생에 대한 통지의 수령
- 11. 그 밖에 집합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가)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방법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 일전 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 거래	피델리티는 펀드, 계정 또는 트레이딩 데스크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최적의 거래체결 방침(best execution policy)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개회사와 일반적인 거래관계를 체결하기에 앞서 피델리티는 중개회사에 대하여 독자적인 리서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유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거래 체결을 수행하게 될 중개회사를 선정하고 최적의 거래체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델리티는 다음과 같은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중개회사 선정시 고려되는 핵심 요소: • 거래 규모와 종류 • 유동성 • 거래 효율성 • 영업/운영 현황(capital utilization) • 수수료율 또는 스프레드의 적정성 • 결제청산(clearance) 또는 결제능력 • 중개회사의 신용도
장내파생상품 거래	위와 같음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및 특별자산의 최저투자비율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전환	수익자의 요청으로 하나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대상 투자신탁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상호 전환 가능한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